

2014. 12.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목 차 -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 1. 세제·부동산 ..... 1

-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 / 1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시행 / 2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3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 4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학력 제한 철폐 / 5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 6

#### 【도 자체 시행】

- 지방세관련 중소기업 멘토링제 운영 / 7

### 2. 공정거래·금융·조달 ..... 8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8
-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출납폐쇄기한 및 결산제도 등 변경 / 9

### 3. 산업(중소기업·특허) ..... 10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지원 / 10
- Pre-World Class 유망기업 육성 / 11

#### 【도 자체 시행】

-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 12
- 창업 꿈나무 사업화지원 / 13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시행 / 14
- 전북상품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 15
-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 16
-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 17
-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18
- 전북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 / 19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 20
- 창의적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 21
- 「전북 R&D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2
-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23
-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 24

### 4. 환경·국토 ..... 25

-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25
-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이관 / 26
- 가스경질유 사용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적용확대 / 27
- 어린이용품 위해성 초과시 사용 제한·금지 가능 / 28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29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사후관리 강화 / 30
-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 31
-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개선 / 32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운영 / 33
-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 부담 완화 / 34
- 도시공원내 음식 판매 자동차 식품 판매 허용 / 35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방법 및 의뢰 개선 / 36
- 상수원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 37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 / 38
-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 39
-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화 / 40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 41
-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 42

#### 【도 자체 시행】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 43
-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설치 / 44
-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 45
-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 46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 47
- 전라북도 약취배출시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48
- 소규모 노인용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49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 50
-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51

### 5. 보건복지·여성 ..... 52

- 호국보훈수당 도입 / 52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 / 53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대폭 완화 / 54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추가 지원 / 5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5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5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58
-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 59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 60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61
- 국가예방접종 1종 확대 실시 / 62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신규 도입 / 63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 6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대상 확대 / 65
-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 66
-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 67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 68

**【도 자체 시행】**

- 안심 먹거리 운동 추진 / 69

**6. 고용노동 ..... 70**

**【도 자체 시행】**

- 「청년취업지원」사업 개선 / 70

**7. 안전·행정·법무 ..... 71**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71
- 공직자윤리법 개정 / 72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등에 광고 전송시 등의 의무화 / 74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관서에 제출 / 75
- 영상제작센터(인터넷방송)운영 / 76
-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77

**【도 자체 시행】**

- 선도 정보화마을 선정 확대 / 78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도민 알권리 보장 / 79
- 문화·관광분야 스마트폰 앱 통합 서비스 / 80
- 다국어 민원 안내 스마트폰 앱(전북민원+) 서비스 / 81
- 도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책자발간 / 82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 83

- 민생 6대 분야 도민감시원 활동 개시 / 84
-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체험장 운영 / 85
- 재난취약계층 119 간편신고서비스 시행 / 87
- 소방서 방문없는 소방민원 처리 / 88
-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으로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 89
- 언제나 찾아오고 어디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 90

**8. 교육·문화 ..... 91**

- 문화·예술인패스 시범 시행 / 91
-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 94

**【도 자체 시행】**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 95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지원 / 96

**9. 농식품·산림 ..... 9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97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완화 / 98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99
-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100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101
-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 / 102
- 발농업직불금 전품목 확대 지급 / 103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 105
-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변경 / 106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조정 / 107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용자이율 인하 / 107
- 표고자목 구입비용 국비지원 / 108
-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및 의무사항 폐지 / 109
-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 110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 111

**【도 자체 시행】**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 112
- 어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 113
-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 114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 / 115
- 데미샘 자연휴양림 예약시간 및 결제방법 확대 / 116
-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117

## <참고> 실국별 달라지는 제도

### □ 감사관

- 공직자윤리법 개정 / 72

### □ 기획관리실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8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등에 광고 전송시 수신 동의 의무화 / 74

#### 【도 자체 시행】

- 도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책자발간 / 82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 83
- 선도정보화마을 선정 확대 / 78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도민 알권리 보장/79
- 문화·관광분야 스마트폰 앱 통합 서비스 / 80
- 다국어 민원 안내 스마트폰 앱 서비스 / 81

### □ 자치안전국

-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 / 1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
-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한 및 결산제도 등 변경 / 9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71

#### 【도 자체 시행】

- 지방세관련 중소기업멘토링제 운영 / 7
- 민생 6대 분야 도민감시원 활동 개시 / 84

### □ 농축수산식품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시/97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완화/98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99
-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100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01
-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 / 102
- 발농업직불금 전품목 확대 지급 / 103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지원 / 104
- 농업용 면세유공급 기준변경/ 105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조정 / 106
- 조사료 생산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용자금 이월안하 /107
- 돼지고기이력제 전면시행 / 110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 111

#### 【도 자체 시행】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 112
- 어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 113
-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 114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 / 115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인패스 시범 시행 / 91
-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 94

#### 【도 자체 시행】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 95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지원 / 96

### □ 환경녹지국

-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5
-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이관 / 26
- 가스경질유 사용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적용확대 /27
- 어린이용품 위해성 초과시 사용제한.금지 가능 /28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29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사후관리 강화 / 30
-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 31
-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개선 / 32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운영 / 33
- 표고자목 구입비용 국비지원 / 108
-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및 의무사항 폐지/ 109

#### 【도 자체 시행】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 43
-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 / 44
-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 45
- 데미샘 자연휴양림 예약시간 및 결재방법 확대 / 116

### □ 복지여성보건국

- 호국보훈수당 도입 / 52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 / 53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대폭 완화 / 54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추가 지원 / 5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5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5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58
-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 59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 60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61
- 국가예방접종 1종 확대 실시 / 62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신규 도입 / 63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 64
- 산모·산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확대 / 65
-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 66

#### 【도 자체 시행】

- 안심 먹거리 운동 추진 / 69

#### □ 건설교통국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3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학력 제한 철폐 / 5
-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 부담 완화 / 34
- 도시공원내 음식 판매 자동차 식품 판매 허용/35
- 건설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 징수방법 및 의뢰 개선/36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 4
-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 42

#### 【도 자체 시행】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 50
-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51

#### □ 경제산업국

- 산학협력력 기술개발사업 확대지원 / 10
- Pre-World Class 유망기업 육성 / 11

#### 【도 자체 시행】

- 「청년취업지원」사업 개선 / 70
-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 12
- 창업 꿈나무 사업화지원/ 13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시행 / 14
- 전북상품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 15
-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 16
-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 17

-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18
- 전북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 / 19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 20
-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 21
- 「전북 R&D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2
-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23
-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 24

#### □ 대외협력국

-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67
- 전라북도 영상제작센터(인터넷방송) 운영/ 76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68

#### □ 새만금추진지원단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6
- 상수원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37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38
-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 39
-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화 / 40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 41

#### □ 소방본부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관서에 제출 / 75
-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77

#### 【도 자체 시행】

-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체험장 운영 / 85
- 재난취약계층 119 간편신고서비스 시행 / 87
- 소방서 방문없는 소방민원 처리 / 88
-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으로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 89
- 언제나 찾아오고 어디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실시 / 90

#### □ 농업기술원

#### 【도 자체 시행】

-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117

#### □ 보건환경연구원

#### 【도 자체 시행】

-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 46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 47
- 전라북도 약취배출시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48
- 소규모 노인용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49

## 1. 세제·부동산

###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1)

■ 「금연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담배가격 인상(2,000원)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됩니다.

- 담배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 인상분은 기존 담배관련 제세공과금에 개별소비세 반영
- 강력한 비가격 정책 및 금연치료 집중 지원

#### <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 >

- ▶ 추진배경 :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 ▶ 주요내용
  - 담배소비세율 인상 : 현행 20개비 1갑당 641원 ⇨ 1,007원(366원 인상)
    - ※ 지방교육세율은 현행 담배소비세의 50% ⇨ 43.99%로 인하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749)

■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 실수령액은 (이자·배당소득액) - { (원천징수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 }이 됩니다.

## ※ 이자소득 지급시



##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추진배경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지방 세수 확보
-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매월 납부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액으로 차감
- ▶ 적용시기 : 2015년 1월부터 시행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063-280-3462)

-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됨에 따라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 <청약제도 개편>

- ▶ 추진배경 :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 및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
- ▶ 주요내용
  -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도 자격 부여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폐지
  -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
- ▶ 시행시기 : 2015년 3월 시행 예정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063-280-2368)

■ 1~2인 가구 증가 등 수요변화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4개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이 추진됩니다.

- 도내 임대수요는 2018년까지 1만5천호에 달하는데 이중 1만호를 LH,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신규건설·맞춤형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 잔여 5천호는 다가구주택 신축 등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

- ▶ 추진배경 : 2018년까지 임대수요가 1만5천호에 달하나 공공임대주택공급은 LH, 전북개발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 등을 통해 1만호공급 추진
- ▶ 주요내용
  - 공공건설임대 : LH 개발공사, 민간업체 등 주택공급(5,500세대)
    - 전북개발공사 : 만성지구 등 2,000여 세대
    - LH : 익산인화 행복주택, 전주반월2지구 등 2,000여 세대
  - 맞춤형 임대 : LH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공급(4,500세대)
    - 매입임대(800여 세대), 전세임대(3,700여 세대)
- ▶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계획 추진
  - 2015년(1,512호) : 익산인화 612호, 매입임대 200호, 전세임대 700호 등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학력제한 철폐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063-280-2351)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

-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한정되었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

-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실무 7년 이상이면 전문인력 인정함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함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학력제한 철폐>

- ▶ 추진배경 :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차별 분위기 쇄신 및 다양한 현장경험 활용
- ▶ 주요내용
  - 7년이상 부동산개발 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
  -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시행시기 :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 063-280-2083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서 새만금사업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적용범위 :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관광단지) → 새만금사업 전 지역
- 대 상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내용 : 취득세·재산세 3년간(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시 5년) 100%, 2년 50% 감면

## < 새만금사업 지역 세제혜택 >

### ▶ 세목별 세제혜택

구분	감면대상	법인세·소득세	관세 등	취득세·재산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새만금위원회 의결시 5년간 100%, 2년간 50%	관세 전액 감면 ※새만금위원회 의결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추가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새만금위원회 의결시 5년간 100%, 2년간 50%

▶ 시 행 일 : 2015년 1월 1일부터

## 지방세관련 중소기업 멘토링제 운영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1)

### ▣ 도내 세무공무원 중 100명을 중소기업 세무상담 전담사 지정

- 도·시·군 지방세 업무 10년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기업멘토링제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등 도움 제공
- 중소기업은 지방세 전문가의 사전상담으로 경제적·시간적 편의 제공

#### < 지방세 관련 기업멘토링제 운영 주요내용 >

##### ▶ 개 요

- 법인징수현황 : 7,134억원(지방세 총액의 49%)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100개 선정
- 운 영 방 법 : 1인 1기업 지방세 전담상담자 지정

##### ▶ 주요내용

- 시기별 지방세 신고기간 등 SNS 활용 사전 정보 제공
-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애로사랑 수렴 적극 해결
- 지방세 이외의 불편사항 수렴 해당 실과로 이첩 등 도움 제공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2. 공정거래 · 금융 · 조달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전라북도 예산과(☎ 063-280-4147)

-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28.) 되어 시행('14.11.29.)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금지되고,  
\*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3년을 주기로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설치근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 ▶ 구 성 :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 주요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 3년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 ▶ 시 행 일 : 2014년 11월 29일부터

#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출납폐쇄기한 및 결산제도 등 변경

전라북도 회계과 ☎ 063-280-2468

■ 지자체의 공금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변경됩니다.

- 출납폐쇄기한 : 익년도 2월말 → 회계연도말 (2015회계 연도부터 적용)
- 출납정리기한 : 출납원 수납(회계연도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일상경비(15일까지 반납)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 까지

■ '결산제도' 도 작성시기, 작성서류 등이 전면적으로 개선됩니다.

- 결산서 작성시기 : 다음연도 5. 19일 → 출납폐쇄후 80일(3. 20)
- 통합결산서 작성 : 결산서류(7종→3종) 통합, 성과보고서 추가
  - 현행 :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채권현재액·채무현재액·공유재산 현재액·물품현재액 보고서  
(재무결산) 재무보고서
  - 개선 : ① 결산개요, ② 세입세출결산(기존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보고서), ③ 재무제표(기존의 재무보고서), ④ 성과보고서(신규)\*
- \*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결산서에 계속비·예비비·이월비 명세서, 보조금 반납액 등 첨부

■ 아울러 '도급경비제도'는 삭제됩니다.

### 3. 산업(중소기업 특혜)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지원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4726)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확대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2014년도 지원업체 80개 → 2015년도 지원업체 100개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 ▶ 추진배경 : 산학연 협력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월
  - 사업비 : 8,2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2,000, 자부담 2,000)
  - 지원대상 : 산학연협력을 통해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00개 업체(2014년도 80개업체)
  - 수행기관 : 도내 각 대학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연구기관
-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Pre-World Class 유망기업 육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32)

■ 정부에서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기업 'World Class 300'기업 육성에 따라 도내 유망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에 선정되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기업 후보군 육성을 통한 지역 기반 중간 기업군 저변 확대 및 지역의 유망기업 육성체제 활성화

### <Pre-World Class 유망기업 육성>

-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50, 자부담 250)
- ▶ 사업규모 : 5개 기업(Pre-WC 선정 기업)
- ▶ 사업내용 : 해외진출, 기술개발, 인력, 금융, 경영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시행주체 : 전북테크노파크

##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2871)

-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4050세대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등 지식서비스 관련 예비창업자의 창업 교육 및 창업실행을 중점 지원
  - 무조건적 창업으로 인한 창업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하고 체계적인 창업 준비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

###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 ▶ 추진배경 : 퇴직이후 경력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시니어층 실업 해소
- ▶ 주요내용
  - 창업이론 및 경영기법, 현장실습, 사후 컨설팅 지원 등
  - 사업화 자금 지원
  - 수료후 창업시 특례보증자금 지원(최고 3천만원 한도)
  - 맞춤형 마케팅 등 사후관리 지원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2871)

▣ 도내 대학 및 고교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창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 도내 대학 및 고교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후속 사업화 One-Stop 서비스 지원

### <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

- ▶ 추진배경 : 창업 연령이 낮아지고 대학 재학생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창업 꿈나무들에게도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분위기 확산
- ▶ 주요내용
  - 도내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의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개 오디션 추진
  - 전문가컨설팅 - 시제품제작 - 보육센터 입주 지원
  -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비 지원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시행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063-280-4162

■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자립경영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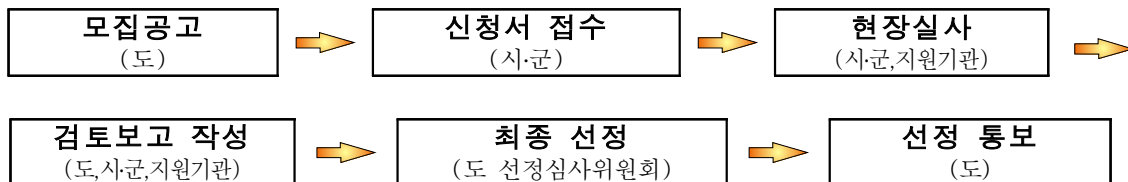
- 도내 마을기업은 89개소로 이중 56개소가 2년간 80백만원의 자금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판로개척, 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자립형 마을기업 중 연매출 3천만원이상~3억원이하(예정)의 공동체성과 자립가능성이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브랜드개발, 시설·장비구축, 홍보·마케팅 지원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우수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 <마을기업고도화사업 개요>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 사업규모 : 10 ~ 15개소
- 지원내용
  - 기술 및 브랜드개발, 시설·장비구축, 홍보·마케팅 지원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 (개소당 20백만원~30백만원)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추진근거 :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 추진절차



## 전북상품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6)

- 급변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소비자의 Needs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우수상품 온라인 마케팅 판매시장 입점을 지원하고 인터넷 쇼핑몰 매출 증대를 위해 광고 홍보와 경품행사 등 판촉행사를 추진합니다.
-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통한 상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 <전북상품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 ▶ 추진배경 : 기업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신규 시장 개척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비 : 350백만원(온라인 250, 오프라인 100)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사업주관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사업내용
    - 《On-line 분야》
      - 시즌·테마별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 유명 모바일 쇼핑몰을 활용한 특별 행사 진행(G마켓, 옥션, 11번가 등)
      - 방문·구매고객 대상 경품행사 등
    - 《Off-line 분야》
      - 농협 하나로 클럽·마트 연계 프로모션 진행
      - 친환경·유기농 상품 프로모션 지원 강화(초록마을, 올가 등)
      - 중소기업 대상 종합박람회(G페어 등) 참가 지원
      - 직거래 장터 운영 등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 창업기업과 중견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들이 중견기업들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진출 용이성 확보 및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업경쟁력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사업비 : 59백만원(도비 50, 자부담 9)
  - 사업규모 : 도내 소재 창업기업 및 중견기업 65여개
  - 사업내용 : 맞춤형 1:1 경영 멘토링 시스템 운영, 동반 성장 R&BD 구축·운영, 동반 성장 혁신 사례 발굴, 동반 성장 인력 공동 포럼 등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 전문인력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

- ▶ 추진배경 : 창업기업과 취업생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1년간)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규모 : 30여명
  - 교육분야 : SW-IT 융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모바일 플랫폼 개발 교육 : 1개과정 15명
    - 모바일 웹 개발교육 : 1개과정 15명
  - 교육내용
    - 프로그래밍언어 : C Programming, 모바일3D 응용 및 실무 프로젝트 수행 등
    - 특강 및 교양 : 콘텐츠기획 및 IT/SW기업소개, 취업준비방법 등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 창업기업 재직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실무능력 배양 및 이직방지를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 재직자 SW 프로젝트 수행능력 향상, SW 시제품가치증대, SW품질관리 및 신기술개발 역량 증대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역량증대와 기업 우수인력 이직방지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사업>

- ▶ 추진배경 : 창업기업 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1년간)
  - 사업비 : 72백만원(도비 50, 자부담 22)
  - 사업규모 : 90여명
    - 창업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 및 엔지니어
  - 교육내용 : SW-IT 융합 분야
    - 웹 응용·기획 실무, 그래픽 디자인 실무, Web & App 개발 및 직무교육 등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전북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 기업과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3D프린터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3D프린팅산업 육성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거점 확보 및 아이디어 상품화 지원을 통해 기존 기업의 성공 가능성과 신규 기업의 창업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북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 사업>

- ▶ 추진배경 : 창조적 아이디어의 3D프린터를 통한 구현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및 저비용의 시제품 제작으로 개인 및 기업의 창업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총사업비 : 30억원(전북시제품제작소 22,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8)
    - '15년 사업비 : 12억원(전북시제품제작소 10,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2)
  - 사업규모 : 전북시제품제작소 구축 1개소,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구축 1개소
  - 사업내용 :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TP)와 연계한 시제품제작소 기반 구축(10억원)
      - RP(쾌속조형기), 3D프린터(전문가용), 레이저컷터 등 장비 구축
    - 전통문화창조센터에 전통공예 분야 특화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 시제품 제작소 기반 구축(2억원)
    - 창업기업 및 개인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셀프제작소 설치 운영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4726)

■ 전북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 기 구축된 인프라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간 융합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융합 : 2개 이상의 기술주체가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결합 비교적 단기간(5년 이내)에 상용화를 이루는 사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기술융합을 통해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 보유)

###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 ▶ 추진배경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융합 활성화 지원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비 : 670백만원(도비 400, 자부담 270)
  - 지원대상 : 융합을 통해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8개 과제(16개사)
  - 수행기관 : (사)전북대학교 자동차 부품·금형 기술혁신센터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4)

- 중소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문제 해결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품질혁신기법 전문가의 현장지도 및 코칭을 통한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공정개선을 지원합니다.
- 전문가의 현장지도 및 코칭을 통한 창의적 품질개선기법의 생산현장 적용과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을 통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향상된 품질혁신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품질혁신기법(TRIZ)\* 컨설팅 및 문제해결안 도출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장비 공정개선 지원 등
- \*TRIZ :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모순된 상황에서 창의적 해결원리 도출)

## <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

- ▶ 추진배경 : 대기업 적용에 적합한 기존의 6시그마 등의 혁신기법과는 달리, 직무별 조직구성이 불명확하며 직원 1명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TRIZ 혁신기법으로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이 필요함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비 : 125백만원(도비 96, 자부담 29)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 5개사/1년
    - ※우수혁신성과 기업에 한하여 최장 2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시행주체 :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 지원내용 : TRIZ기법 교육 및 현장지도, 현장공정개선 지원, TRIZ전문가 양성 (공모-선정을 통해 업체당 19,200천원 지원)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전북 R&D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4)

■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R&D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함으로써 기업 등 수요자가 도내에서 생산·관리되는 R&D정보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 R&D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합니다.

- 전북 R&D사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이트 (<http://rnd.jbtp.or.kr>)
- 지역 내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운영
  - 지역 R&D사업 수행 현황(유형별·주제별) 및 연차별 성과 관리
  - 도내 연구기관·대학 보유 R&D자원(특허, 인력, 장비 등) 현황 조사 및 관리
  -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정보 외부 공개·공유 서비스

## < 전북 R&D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 추진배경 : 기존까지는 연구기관별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 특허·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까닭에 수요자의 R&D정보 이용이 제한적이었음

이에 지역 내 연구기관 R&D관련 통합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가 편리하게 R&D종합정보에 접근·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등 수요자의 R&D종합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확충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운영
  - 사업기간 : 2015. 1 ~
  -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 이용대상 : 도내 R&D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시행주체 : (재)전북테크노파크
  - 제공정보 :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R&D관련 종합정보

##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063-280-2165)

- 탄소복합재기반 생활용품, 서비스산업 등에 활용할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까지 R&D지원을 통한 예비창업자 및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등과 연계한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탄소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합니다.
-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에 맞는 탄소복합재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에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 합니다.

###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기 구축된 탄소산업 관련 인프라로 탄소 벤처창업기업 육성
- ▶ 사업기간/사업주체 : 2015(1년)/한국탄소융합기술원
- ▶ 주요내용
  - 탄소복합재기반 창업기업의 발굴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력양성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R&D 지원 시스템 마련
  -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평가 분석지원, 설계 및 역설계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기타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 도내 대학교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보육을 위한 중점지원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

##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전라북도 산업진흥과(☎ 063-280-2267)

- 뿌리기술 노하우전수(인력양성) 및 뿌리제품 생산·수요처확보에 도움을 받고자 도외 뿌리기술 전문가의 도내 기업 채용을 지원합니다.
- 수요기업들은 직원의 기술력을 기업의 기술력으로 판단하므로, 기술력을 보유한 숙련공은 일감확보에 기여하고
- 고급숙련공과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기술을 습득하므로 인력양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

- ▶ 추진배경 : 뿌리기술은 고급 인력양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숙련 기술인력의 노하우가 중요하나, 도내 기업의 임금 수준으로는 고급 숙련공 채용에 한계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년~2017년(3년간)
  - 지원대상 : 뿌리 20년이상 근무한 타 시·도 기업 근무경력자 대상
  - 지원내용 : 월 200만원·인건비 1/3이하 범위 인건비보전
    - 1개 기업당 1회, 1년이내 지원
  - 지원규모 : 연 2억원규모 지원(10명 내외)
  - 사업주체 : (재)전북자동차기술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4. 환경·국토

### 건물에 부과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 063-280-2318)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연 2회, 상·하반기)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7.1)부터는 면제된다.
-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감면 대상>

- ▶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91.12 제정, '93년부터 시행)
-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
- ▶ 면제(감면) 대상
  - 경유차 중 Euro-4 기준 충족시 감면, 유로-5 기준 충족시 면제
    -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부담금 감면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등급별 차등 감면

##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이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25)

■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유독물 등 관리업무(영업등록, 지도점검 등)가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 유독물 영업을 하려는 사업장은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영업 등록 【인허가 : 지자체장】
- (변경)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영업 허가 【인허가 : 환경부장관】  
\* 업무이관 : 지자체 → 환경부

### <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 이관 >

- ▶ 추진배경 :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도록 관련법 개정
- ▶ 주요내용
  - (법령명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인허가) 시·도지사에게 등록 ⇒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의 허가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적용 확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25)

- 2015년 1월 1일부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의 경우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 용적이 30m<sup>3</sup> 이상인 옥장업의 숯가마·찜질방, 용적이 150m<sup>3</sup> 이상인 숯 또는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도 배출시설에 해당
  - 2015년 1월 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대상이 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어린이용품」 위해성 초과시 사용 제한·금지 가능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52)

-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개선을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2015년 1월 1일 이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
  -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적용품목이 위해성 초과시 사용 제한·금지 >

- ▶ 추진배경 :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 적용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강화
-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초과 「품공법」 적용품목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금지
    - 품공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준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의 제한·금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1)

##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05년 1월 1일부터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25,000톤 이상 법인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의 거래 허용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 추진배경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상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 3년간(11년~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천톤 이상인 업체나, 25천톤 이상인 사업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내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 시행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사후관리 강화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 063-280-4181)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 관리강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4.7.17일 개정·공포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 ('15. 7. 16까지) 시설 기준을 맞추어 등록 의무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1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우리나라가 '93년 CITES 협약 가입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갈수록 부각

###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사후관리 주요내용 >

- ▶ (유통관리 강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 ▶ (인공증식관리) 국내에서 증식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한 맹수류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사육관리) 시행령(제13조의3)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23조의7)에서 정한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 시설면적 기준 등을 맞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기준을 맞추어 등록하면 된다.

# 환경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 063-280-453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산업분야의 경영지원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 총 2,226억원의 환경정책 자금을 지원
  - 이는 2014년 환경정책자금 1,825억원에 비해 2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1,036억원, 환경개선자금이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84억원, 지방상수도개발자금 31억원
-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부문은 2014년 750억 원에서 286억 원이 늘어난 1,036억원이 책정되어, 전년 대비 38% 증가

## < 환경정책자금 운용별 지원 내용 >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재활용사업자 등이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제작·구매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재활용산업의 성장에 따라 현장의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 국내 재활용업체의 창업과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기여
- ▶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전년대비 동일한 455억원, 620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
  -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환경산업 육자 조건에 충족하는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며 업체들의 시설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환경개선자금은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자금으로도 활용
- ▶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과 지방상수도 개발자금은 환경부의 환경정책 자금 융자지원 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 운영된다.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개선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2878)

##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개선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설립 승인
-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도 공장설립 가능

###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 개선>

- ▶ 추진배경 :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제한적 허용
- ▶ 주요내용
  -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설립 허용 업종(4개 업종에 한함)
    - ① 떡·빵류 제조업 ②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③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④ 커피가공업
  - 설립공장의 준수사항
    -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 금지
- ▶ 적용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운영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3557)

-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토양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
  - 토양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명령 등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음
    -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문 가능함
  -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토양보전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토양환경센터 설치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운영 >

- ▶ 추진배경 : 토양정화 ‘오염원인자’ 정화체계 개선
- ▶ 주요내용
  - 오염토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제
    - ‘96.1.6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전 토지를 양도 등르로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96.1.6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전 토지를 양수한 경우
    - 오염토지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인 경우
  - 정화조치 명령의 우선순위 도입
    - 정화책임자들의 귀책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조치명령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설치
    - 지자체장의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문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 부담 완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4451)

■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시 선분양 요건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선(先) 공급기준을 “공사 진척률 10%이상” 조건을 “공사착수”로 완화
-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 비율을 “25%이상”으로 완화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부담 완화>

- ▶ 추진배경 : 민간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산단 개발 촉진
- ▶ 주요내용
  - 민간 사업자 선 분양 요건 완화
    - 산단 선공급기준 : 공사 진척률 10%이상 → 공사착수  
(요건) ① 해당토지 소유권확보 ② 공사착수 ③ 이행보증서 제출
  -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 50%이상 → 25%이상
    -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수익 재투자: 100%→ 50%이상
- ▶ 적용시기 : 산업입지법 개정('14. 12월 중 시행 예정)

#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식품판매 허용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4498)

■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 영업자 공모, 영업신고 등을 통해 식품판매 행위가 가능해 졌습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제외)
- 허용차량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행위

##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 식품판매 허용>

- ▶ 추진배경 :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시공원 이용자 편의 증진
- ▶ 운영절차
  - 허용지역 및 업종선정(시·군 공원관리부서)
  - 공원조성계획 변경(시·군 공원관리부서)
  - 영업자 공모 및 선정(시·군 공원관리부서)
  - 영업신고(푸드트럭 영업자)
  - 영업신고증 발급(시·군 식품위생부서)
  -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푸드트럭 영업자)
  - 도시공원 내 영업허가증 발급(시·군 공원관리부서)
  - 푸드트럭 영업개시
- ▶ 시행시기 :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건설공사 품질 시험수수료 징수방법 및 의뢰개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063-290-6747)

■ 조례규칙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지방규제개혁의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민원의 불편을 주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5월22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 민원인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용 징수 방법
  - 품질검사의뢰 시 확인서 폐지 '품질검사 의뢰서' 서식으로 변경
-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및 '품질검사 의뢰서' 서식 간소화로 수수료 징수 투명성 향상 및 행정의 신뢰도 효율성 기대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 및 의뢰 개선>

- ▶ 추진배경 : 상위법 개정 및 지방규제개혁의 정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제도 정착
- ▶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 수수료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용 징수 방법
    -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로 반영
  - 품질검사의뢰 시 확인서 폐지
    -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로 변경
  - 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용어 정비
    - '품질검사 성적서'로 변경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된 지역과 4대강 수변구역이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 ▶ 추진배경 : 가축사육에 따른 수질 환경오염 방지
- ▶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확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지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재활용 신고자와 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신설되는 등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과 정화시설은 허가대상인 가축분뇨관련영업으로 분류되고,
    -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은 재활용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 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

-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
- ▶ 주요내용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재구분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허가대상)퇴·액비시설을 제외한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 (재활용신고자, 신고대상)퇴비화·액비화시설
  -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비 또한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등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 준공검사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액비의 품질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 ▶ 추진배경 : 가축분뇨 등의 공공수역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 주요내용
  - 퇴·액비의 유출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 유입 방지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가축분뇨 등에 대한 공공수역 유입 시 벌금규정 강화
  - 가축분뇨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등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준공검사
  - 준공검사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화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설치허가의 취소만 규정되어있던 행정 제재가 위반정도에 따라 다양화되어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합니다.

###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화>

- ▶ 추진배경 : 가축분뇨법상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시설 행정제재 다양화
    - (종전)허가취소
    - (개정)허가취소, 폐쇄,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 행정명령 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및 처리사항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입지한 축사에 대해 거리제한이 유예됩니다.
-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 ▶ 추진배경 :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 ▶ 주요내용
  -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를 위해 3년 동안 가축분뇨거리제한 유예
- ▶ 적용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7)

■ 2015년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 적용

-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 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시행 >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과태료)

- 1차 승차거부 시 : 20만원
- 2차 승차거부 시 :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 3차 승차거부 시 : 60만원과 운전 자격취소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1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 2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감차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 3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취소

▶ 적용시기 :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4702)

- 장래 물부족 등에 대비하고자 '15년부터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합니다.
- 유치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26개소와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 13개소 등 39개소에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18년까지 도내에 100개소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 ▶ 추진배경 : 장래 물부족 등에 대비하여 버려지는 빗물 이용방안 마련
- ▶ 주요내용
  -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 유치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 26개소와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 13개소 등 39개소
  - '18년까지 도내 150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4702)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저감시설을 설치합니다.
- 자연방사성물질 중 우라늄과는 달리 라돈은 수질 검사 항목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가 원수인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시설에 라돈 저감시설 설치
-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826개소 중 수질검사 미실시 52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의 기준치(4,000pCi/L) 초과시 저감 방안 마련

### <소규모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

- ▶ 추진배경 : 소규모수도시설 사용하는 주민들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 ▶ 주요내용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저감시설 설치
  -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시설에 대한 저감 시설 30개소 설치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3454)

-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설치합니다.
- 화장실로 인한 여성의 불편해소를 위해 여성친화 3대서비스사업(공공시설 여성화장실 2배설치, 여성전용주차장 확대, 유모차 대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5년~'17년까지 14개소 시범설치
  - 도내 관광지 및 공원 등 14개소에 대하여 시범설치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

###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

- ▶ 추진배경 :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 해소
- ▶ 주요내용
  - 여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 설치
    - 도내 관광지 및 공원 등 14개소에 대하여 시범설치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 부하량 조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245)

## ■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맞춤형 수질측정망 확대운영

- 새만금사업 성공요건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상류수질개선대책 효과분석을 위한 오염부하량 조사 필요
- 전라북도 '15년 새만금 중간평가 대응계획 수립(2014.9.4.)의 일환으로 만경강 수질측정지점 확대 및 오염부하량 관리

###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부하량 조사>

- ▶ 추진배경 : 새만금 수질 중간·최종평가 대비 수질개선대책 효과검증 및 오염원 관리
- ▶ 주요내용
  -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맞춤형 수질측정망 운영
    - 기존 수질측정망 26개소 → 46개소 (20개소 추가)
  -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상시 유량조사체계 구축(만경강 본류 중심)
    - 기존 수질 검증 → 오염부하량 (수질 + 유량) 검증
    - 8일 간격으로 만경강 주요지점(20개)의 오염부하량조사
    - 유량조사팀(4인/팀) 상시운영(매일 현장조사)
  - 새만금유역 중 오염부하량이 높은 만경강 수질개선 달성을 위한 수질 및 유량자료 확보
  - 하천별 최적 관리방안 도출
- ▶ 조사시기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년간)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254)

### ▣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으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필요
-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던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초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일기예보, 연구원 대기정보시스템의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경보를 전달합니다.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 ▶ 추진배경 :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 주요내용
  - 예보 횟수 및 항목 확대
    - 예보횟수 2회/일→4회/일, 항목은 초미세먼지, 오존 추가
  - 현행 6개 예보권역을 10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세분화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조정하여 예보
    - 4개 등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보 도민에게 제공
    - 연구원 대기정보시스템의 문자메시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오염 정보 제공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도민의 행동요령 및 지자체 조치사항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악취배출시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343)

### ■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사전 방지

-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질 처리가 미흡,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악취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악취관리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 ▶ 추진배경 :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사전 방지
- ▶ 주요내용
  - 악취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 도지사는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도지사는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민원사항 조치결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도지사는 지정·고시한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분기당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민원발생 사유 및 조치결과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344)

## ■ 점검대상 제외시설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증가와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점검대상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000 m<sup>2</sup>이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됨
- 전북지역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취약시설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 ▶ 주요내용
  - 조사대상 오염물질 및 환경인자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 온도, 습도, 청소상태, 입 소노인수 등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을 정원 50인 미만 10개소, 50인 이상 10개소를 선정하여 각 분기별 5개소를 조사함
  - 연구방법
    -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기여부, 방향제사용여부,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는 지역 등을 고려함
    - 실내공기질 조사결과와 환경요인, 거주인의 활동요인 등을 분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제시함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7)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등·하교시 통학택시를 지원·운영하여 통학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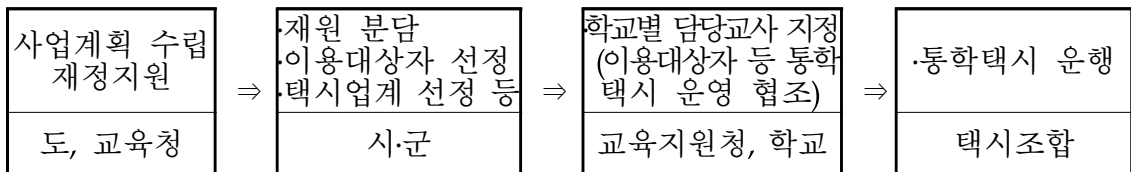
-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들의 교육(통학) 환경 열악
  - 통학버스 이용자 지각·결석율은 2.3%, 통학버스 미이용자는 21.4%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의 교육(통학)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교육환경 열악을 이유로 한 이주 억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지속
- 사업비 : 12억원(도비 3억, 시군비 3억, 교육청 3억, 자부담 3억)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1,000명 정도
- 사업내용 :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여 학생 통학편의 제공

▶ 추진체계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063-280-4380)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사업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역단위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규정에 의해 수립하며 14개 시군 계획을 기초로 도 광역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개이상 시군의 연계된 지구, 수계, 유역, 해안지역, 하천, 상·하류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향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2015년~2016년)되면 풍수해계획속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의거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단위 풍수해종합계획수립시 우리도 각종재해에 대한 자료로도 반영 활용됩니다.

## 5. 보건복지 · 여성

### 호국보훈수당 도입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8)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예우 및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15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이 지원됩니다.

#### < 호국보훈수당 지원 >

- ▶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54백만원 ('1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 12,119명 (시군의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14. 9월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5만원 지급을 상한으로 도비 1만원 보조

- 2015년 시군별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단위:명)

시군	계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자녀	무공 수훈자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보국수훈
				유공자	미망인	유공자	미망인	유공자	미망인	
<b>계</b>	<b>12,119</b>	<b>86</b>	<b>227</b>	<b>820</b>	<b>518</b>	<b>5,762</b>	<b>951</b>	<b>3,638</b>	<b>105</b>	<b>12</b>
전주	2,419	36	89	109	116	1,025		1,044		
군산	1,222			12		625		585		
익산	1,354		45		117	727		465		
정읍	1,316		21	39		544	342	349	21	
남원	722			27		542		153		
김제	667		10	52		373		232		
완주	1,196	11	25	552	101	96	292	92	17	10
진안	360				94	158		108		
무주	673	20	17	17	16	376	83	77	67	
장수	621	7		12	16	308	234	44		
임실	365		11		24	224		104		2
순창	310				16	229		65		
고창	478	12			18	278		170		
부안	416		9			257		150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로 전면 개편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 탈빈곤 유인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각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대상자 별도 기준 선정

■ 또한, 저소득 빈곤층이지만 부유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 의무자 기준 현실화
  - 1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4인가구 : 290만원 → 470만원

### □ 최저생계비 및 맞춤형 급여 기준표(14년 기준)

(단위: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4인가구	비 고
현행 통합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603,403	1,630,820	
기준 중위소득		1,493,221	4,035,733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수급자 급여기준(중위소득28%)	418,102	1,130,005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40%)	597,288	1,614,293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43%)	642,085	1,735,365	
	교육급여기준선 선정기준(중위소득50%)	746,611	2,017,867	

▶ 적용시기 : 2015년 7월부터 시행

## 긴급 복지지원 제도 지원기준 대폭 완화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767)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 지원기준 완화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 재	개 정 안
① 소득기준 완화 ( '15. 7월 시행)	·최저생계비 <b>150%</b> 이하 (단, 생계지원은 <b>120%</b> 이하) * 1인 925천원, 4인 2,502천원 이하	·최저생계비 <b>185%</b> 이하(단일기준) * 1인 1,141천원, 4인 3,086천원 이하
② 금융재산 완화 ( '15. 1월 시행)	·금융재산 <b>300만원</b> 이하 (단, 주거지원은 <b>500만원</b> 이하)	·금융재산 <b>500만원</b> 이하 (단, 주거지원은 <b>700만원</b> 이하)
③ 위기사유 확대 ( '15. 1월 시행)	·6가지 위기사유 한정	· 위기상황 인정 요건 완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 확대

※ 금융재산 완화 및 위기사유 확대는 지침 개정사항으로 1월부터 적용가능  
(소득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7월부터 적용)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추가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767)

■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교복구입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130%이하 저소득층, 차상위 150%이하 조손가정, 기타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연 5만원 이내(부족분 지원)

■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2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1인당 평균 교복구입비가 25만원임을 감안하여 추가로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인당 평균 교복구입비 : 25만원(도 5만원 + 교육청 20만원)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4)

■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발굴하여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 (기대효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의 일반적 절차와 업무처리의 전자적 지원으로 공정·정확한 대상자 선정, 원스톱서비스 확대, 제출서류 감소 등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

▶ 적용시기 : 2015년 7월부터 시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33)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으로는

-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정의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077)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4년) 7만원 → ('15년) 10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월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768)

-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가 1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 <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영양가 높고 균형잡힌 식사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 변경내용

- 연            중 아동 급식 : 1일 2식 / 년 365일
  - 이용대상) 아동별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 중 2식 제공
- 방    학    중 아동 급식 : 1일 1식 / 년 90일
  - 이용대상) 방학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중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 1일 1식 / 년 255일
  -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기중 석식 제공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 '15년 7월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 제공 필요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14.05.20), 시행('15.11.21)
- ▶ 주요내용
  -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예산) 43,400천원(발달장애인 가족 : 434가구×200천원×6/12개월)
  - (지원대상)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
  - (서비스 내용)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적용시기 :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1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제공기관 확정 이후 진행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415)

■ '15년 3월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인문학, 교양, 인권 교육 등을 시작합니다.

- 전주시 1개소 개설(운영성과에 따라 군산시, 익산시로 확대 예정)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 추진배경

- 각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과목을 주로 편성하고 있고 장애인이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짐.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양, 인문학, 직업교육 등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목 운영 필요

#### ▶ 주요내용

- (사업비) 250,000천원(도비 40%, 시군비 60%)
- (사업량) 1개소(전주시)
- (주요내용) 교양, 인문학, 직업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등
- (추진일정)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 마련 : '15. 1월
  - 희망단체 위·수탁 공모(전주시) : '15. 1월
  - 민간위탁운영 단체(법인) 선정 심의 : '15. 2월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 협약 체결 : '15. 2월한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 '15. 3월~12월

- ▶ 적용시기 : 2015년 3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예방접종 1종 확대 실시

## [소아 A형 간염 무료접종,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063-280-4692

■ 국가예방접종 1종(소아 A형 간염)의 무료접종이 확대 시행됩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13종(30회) → 14종(32회)
- 접종기관 : 14개 시·군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184개소

### < 2015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 >

▶ 현행지원(13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소아폐렴구균

▶ 추가지원(1종) : 소아A형간염(소아 : 12세이하)

▶ 적용시기 : 2015년 상반기 도입 예정

# 2015년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신규 도입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3252)

##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다음과 같은 어려움 발생
  - 의료기기 보관 시설 기준 미비 ⇒ 제품 오염
  - 취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 관리 미비 ⇒ 위해 제품 추적 어려움
  - 의료기기법령에 대한 교육 미비 ⇒ 전문성 결여
- 이에,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제조·수입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주요내용(의료기기법 개정)

-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 등의 준수사항) 신설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함
  -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설비(건물은 더러운 장소로부터 분리, 보관장소는 충분한 면적과 공간 확보,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여야 함, 채광·조명 적합, 환기 잘 되는 곳에 보관), 관리책임자 지정,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문서기록관리(시설 및 설비대장, 출고대장, 불만처리대장 관리),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연간 총24시간 교육실시) 등 판매업자·임대업자 준수사항 도입
- ▶ 적용시기 :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 ■ 2015년부터 달라지는 금연구역

- 2015년 1월1일부터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 가능

###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부과  
(조례로 정한 지자체는 조례에서 규정한 금액)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백만의 과태료 부과

###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해야 함
- 흡연실의 설치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 설치불가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함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350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 종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확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 ▶ 적용시기 :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

#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2423)

## ■ 2015년부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 노인들의 만성질환 의료비지출 증가에 따른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진료 서비스 지원(대 상 : 500개소)

##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건강관리단체와 MOU 체결 및 진료서비스·건강상담
  - 혈압, 혈당체크, 콜레스테롤, 체성분 등 정기적 봉사 등 건강관리 지원
-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근력강화 건강체조, 체중조절, 식이요법, 발마사지 등
- 건강관리 실천교육
  - 건강생활실천(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금연, 구강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치매, 중풍 예방관리
- 경로당 노인건강기구 지원
  - 건강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가능한 생활기구로 지원 (세라밴드 스트레칭로프, 배드민턴용품 등)

## ■ 사업예산

- 사업비 : 850백만원( 도 255, 시군 595)
- 프로그램 운영비 및 노인건강기구 지원
  - 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비 : 1,200천원×500개소 = 600백만원
  - 노인건강기구 지원 : 500개소× 500천원 = 250백만원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063-280-2241)

■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공동체 의식 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원봉사가 자연스런 사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지속적인 사회문화로 정착될 수 있음
-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확립과 지역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나눔 문화 확산

###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 ▶ 추진방향

-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체험교육 운영
-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희망 자원봉사 나눔 활동 전개
- 가족들이 참여하는 미니 박람회를 통한 직업체험 및 사례 공유

#### ▶ 사업내용

- 지역의 소외계층과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연결
-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재롱잔치, 벽화봉사, 문화공연 등
- 자원봉사 우수활동 나눔을 위한 글짓기 및 사진 대회 등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063-280-2816)

-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가정 조성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125가정(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등)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을 위한 1가정당 왕복 항공료 등 지원
  - 지원액 : 1가정당 4,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추후 시군 사업공고 참조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안심 먹거리 운동 추진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 ■ 2015년부터 안심먹거리 운동 전개

-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확대
- 이에 부응한 안심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 주요 추진내용

- 안심 먹거리 체험교실 및 홍보
- 안심 먹거리 인식 개선 교육

## ■ 2015년 안심먹거리 운동 세부내용

- 안심 먹거리 체험교실
    - 대 상 : 도민 및 방문객
    - 내 용 : 안전한 식재료 안내 및 안심 먹거리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 각 시군의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그 지역의 저농약 • 유기농 • 친환경 농산물을 도민 및 방문객에게 안내·교육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체험교실 운영
  - 안심 먹거리 생산자 교육
    - 대 상 : 농산물 생산자
    - 내 용 : 안전한 식재료 생산을 위한 생산자 의식개선 교육
  - 안심 먹거리 위생교육
    -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대상자
    - 내 용 : 안전한 식재료 취급·관리 방법 안내 및 위생 교육
- ▶ 적용시기 : 2015년 2월부터 적용

## 6. 고용·노동

### 「청년취업지원」 사업 개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063-280-2826

■ 도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적격심사(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사업신청 대상기업은 청년취업비용(월 160만원) 중 최저임금이 정하는 임금 이상(최소 월110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월 8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월급여액	지원금	월급여액	지원금
160만원 이상 ~ 170만원 미만	50만원	18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0만원
170만원 이상 ~ 18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이상 ~	80만원

- 시·군에서는 기업 모집 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과 심사 기준(심사기준표) 등 자체 검증을 통한 적격심사 ※ 심사 결과 50점미만 기업은 지원 탈락

- 청년취업실시 희망기업은 기업소재지 시·군 및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www.1577-0365.or.kr/young](http://www.1577-0365.or.kr/young)) 통한 신청

#### <청년취업지원 사업>

▶ 추진배경 :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비 : 3,900백만원(도비1,560, 시군비 2,340)

- 지원대상 : 500명

(청년취업자) 도내 거주 만 25~39세, 미취업 청년층

(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 추가 고용 시 지원

- 기업지원금 : 최대 80만원 × 12개월(수습3+정규9), 총960만원/1인 최대

\* 다만, 대기업 60만원, 30인미만 기업 생산직 지원(장려금 50만원 × 2회)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라북도 안전총괄과(☎ 063-280-299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협의 및 사업평가 등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제14조)
- ▶ 민간소유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안전관리 강화(제27조 3항)
- ▶ 안전점검 업무 수행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제32조의 2)
- ▶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제34조의 6)
-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 실시 의무화(제35조)
-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제52조)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사항

전라북도 감사관(☎ 063-280-2388)

## ■ 주요내용

### 1.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①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시장형 공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
-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 구체적 대상기관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② 비영리분야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그 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 구체적 대상기관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취업제한 대상기관 3배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14.6.25 시행) >

- 영리 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대상기준 하향 조정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3,910)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13,399)
- 법무·회계법인의 취업제한 대상기준 하향조정
  - 외형거래액 150억(법무19, 회계12) → 외형거래액 100억(법무21, 회계25)
-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협회 등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 삭제

### 2. 취업제한 기간 연장 : 퇴직 후 2년 → 퇴직 후 3년

3.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

※ 고위공직자의 범위(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고위 나급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

4.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

○ 현행 장·차관에서 → 재산공개자로 확대

5.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 공시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시기간 : 퇴직 후 10년간

○ 공시절차

- 퇴직 고위공직자 → 퇴직 전 소속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벌칙 : 1개월 이내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기관업무취급제한의 기간과 대상범위 확대

○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 (대상) 재산공개자(1급 이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7.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사항 보완

○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용어 변경 : '사기업체등' → '취업제한기관'

○ 취업·업무취급·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기존) 징역 1년 ↓, 벌금 1천만원 ↓ → (개정)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

▶ 시행시기 :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 시 수신동의 의무화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3035)

-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 시행시기 :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결과 소방관서에 제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 063-280-3807)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일반건축물 및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 그 외 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 ▶ 추진배경
  -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점검업체의 자체점검 부실 문제 언론 부각
  - 자율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 필요
- ▶ 주요내용
  -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점검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시 방수압력측정계, 감지기시험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 이용 점검
  - 제 출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 불량사항 발생 시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
    - 보완기간 경과 후 보완결과를 소방서에 제출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영상제작센터(인터넷방송) 운영

전라북도 홍보기획과(☎ 063-280-3341)

■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전라북도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해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분기별로 도민UCC 제작 교육 및 도민 리포터·기자 체험교육 실시
  - 교육을 통해 도민 리포터·기자 발굴, 도정뉴스 등 프로그램 참여
  - 도민 UCC 결과물 중 우수작품을 선정,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업로드

### <전라북도 영상제작센터(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업>

- ▶ 추진배경 : 도민과 공감·소통하는 도정 홍보 제고
- ▶ 주요내용
  - 도정 뉴스 및 기획홍보영상 제작
  -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도민 UCC 제작
    - 도민 기자·리포터 체험교육
- ▶ 적용시기 : 2015년 3월부터 적용

##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 063-280-3836)

-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주는 2015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 2. 23. 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와 관련하여, 2015. 2. 22. 까지 가입이 유예되었던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도 2015. 2. 23. 이후 신규로 해당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5. 2. 23. 전부터 계속 영업 중이던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의 경우에는 2015. 8. 22. 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

-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
- ▶ 주요내용
  - 가입자 : 관련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천만원 등
    - ※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적용시기
  - 150㎡ 미만의 5개 업종 : 2015. 2. 23(신규대상), 2015. 8. 23.(기존대상)
    - ※ 금년부터 적용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이 150㎡ 미만의 5개 업종을 제외한 일반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기시행

## 선도정보화마을 선정 확대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597)

▣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한 도내 정보화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변경합니다.

- 주요사업내용

-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기반 조성(체험관건립, 체험도구 구입 등)
-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 포장재 등 지원

- 주요변경내용

- 평가대상을 모든 정보화 마을로 확대하여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 유도  
(기존) 기 선정된 선도마을 제외 ⇨ (변경) 매년 모든 정보화마을 참여 가능
-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대상마을 확대 및 자부담 부여  
(기존) 2개마을, 마을당 50백만원(도25, 시군25)  
(변경) 4개마을, 마을당 30백만원(도12.5, 시군12.5, 자부담 5)

※ 선도 정보화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모델 적용을 위해 2018년 이후에 사업 성과 분석 후 재추진 여부 검토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도민 알권리 보장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386)

▣ 전라북도는 정부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 자료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시각화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내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아름다운 순례길 순례자 현황, 향토음식 업소 지정 현황 등 497개 공공데이터
- 문화관광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등 26개 민간이 데이터 가공할 수 있도록 개발
-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 및 전통사찰 현황 등 30개 시각화(차트, 도표)자료 구축

##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4. 12월 현재)

분야	공공데이터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자료	
	LINK형태	CSV파일	엑셀파일		차트	지도
총계	178	497	497	43	15	15
공공질서 및 안전	40	32	32			
교육	5	14	14	1		
농림해양수산	5	76	76	2	3	
문화체육관광	35	81	81	31	1	6
보건	13	20	20		1	2
사회복지	33	50	50		4	3
산업·중소기업	1	40	40		1	3
수송 및 교통		19	19			
일반공공행정	46	69	69	9	2	1
지역개발		60	60		1	
통신		4	4			
환경보호		32	32		2	

☞ 공공데이터 개방 세부 목록은 전라북도 정부3.0포털([www.opendata.go.kr](http://www.opendata.go.kr))에서 확인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문화·관광분야 스마트폰 앱 통합 서비스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383)

■ 전라북도 문화·관광분야의 모바일 홍보를 위하여 제작, 배포하던 8가지의 스마트폰용 앱이 '전북여행 휴(休)'라는 앱으로 통합되어 서비스 됩니다.

- 다운·설치 방법 :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앱스토어)에 접속 ⇒ 앱 검색창에서 '전북여행 휴' 검색 및 설치 ⇒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북여행 휴' 클릭

## ◇ 연계·통합되는 스마트폰 앱(App)

번호	앱 명칭	구축	주요 제공 서비스	운영부서
1	전북맛집	'11.02	도내 맛집 정보 및 지도서비스	정보화총괄과
2	문화행사 모여락	'13.05	문화시설 및 행사안내, 위치검색	문화예술과
3	전북수학여행	'12.10	도내 수학여행 코스 안내 및 맛집 소개	관광산업과
4	전북이야기	'12.11	관광지 안내(음성기반 스토리텔링서비스)	관광산업과
5	전북유투어	'12.01	전북 관광지 소개,	관광산업과
6	전북마실길	'13.12	마실길 코스 및 길찾기 등	자연생태과
7	대아수목원	'12.10	수목원 안내 및 예약서비스	대아수목원
8	전북전통시장	'12.04	도내 전통시장 안내 및 길찾기, 맛집 소개 등	일자리경제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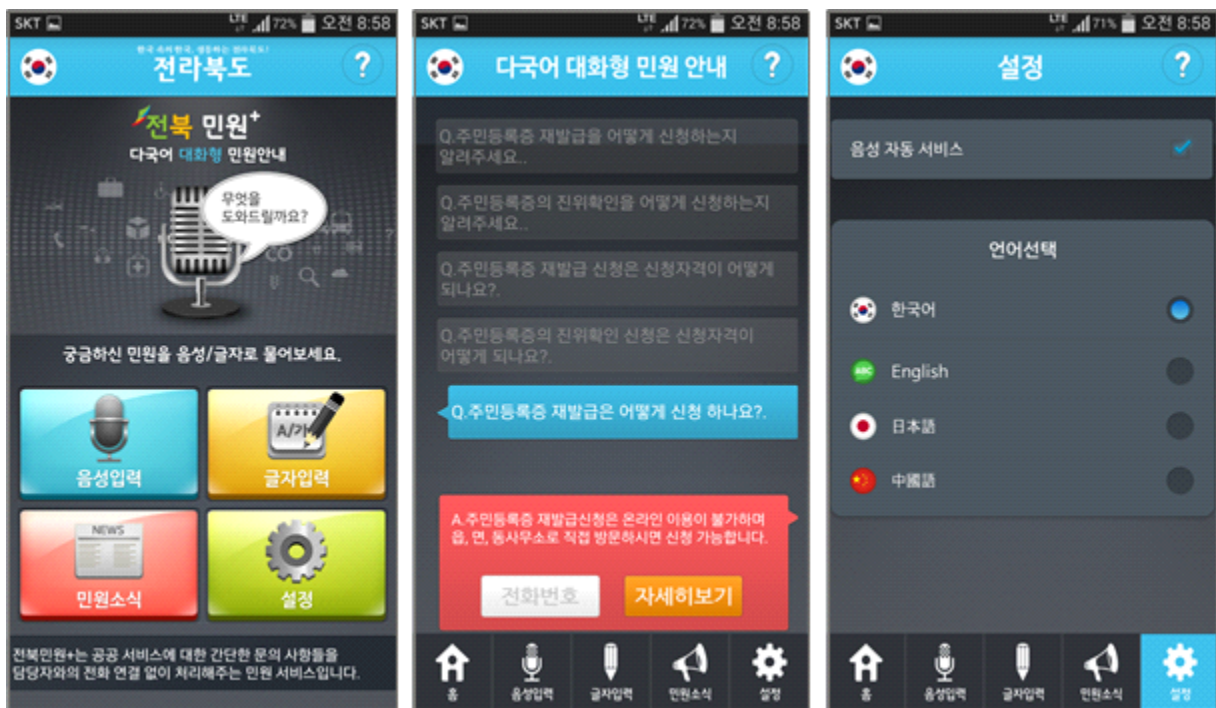
# 다국어 민원안내 앱(전북민원+) 서비스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162)

▣ 외국인을 포함한 도민의 민원처리를 돕고, 복잡한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목록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어 민원안내 앱 '전북민원+(플러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

- 스마트폰에서 “전북민원+(플러스)” 앱을 다운받아 활용가능하며, 한국어 및 영어, 중국어, 일어를 통해서도 서비스 가능
- 원하는 민원을 음성이나 텍스트로 질의하면, 음성으로 답변
- 주민생활, 사회복지, 경제활동, 국민건강, 공공안전, 생활환경 분야 등

※ 다운·설치 방법 :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앱스토어)에 접속 ⇒ 앱 검색창에서 '전북민원' 검색 및 설치 ⇒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북민원+」 클릭



[“전북민원+(플러스)” 앱 이용화면]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도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책자 발간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063-280-2133)

- 자치법규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치법규를 책자로 발간하여 도민 모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시군에 비치합니다.
-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한 사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 도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책자 발간 >

- ▶ 추진배경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책자로 발간
- ▶ 주요내용
  - 발간 시한 : 15년 10월
  - 발간 부수 : 150부
- ▶ 열람시기 : 2015년 11월 1일부터 가능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063-280-2137)

■ 신속한 도민 권익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행정심판 심리 의결후 재결서 송부에 30일이 소요되므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의 신속한 권익구제의 필요성 제기

###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

- ▶ 추진배경 : 행정심판이후 재결서 송부에 30일이 소요되므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의 신속한 권익구제 필요
- ▶ 주요내용
  -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 기존 30일→개선 20일(단축 10일)
-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민생 6대 분야 도민감시원 활동 개시

전라북도 안전총괄과(☎ 063-280-3601)

■ 민생 6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환경, 의약품, 청소년보호) 도민 감시원 운영합니다.

-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도민감시원을 운영하여 도민생활안전 침해 사범에 대한 제보와 효율적인 특사경 단속업무 지원
- 2015년 1월 이후 도민감시원 제보 및 단속지원 활동 개시

### < 민생 6대 분야 도민감시원 활동 개시 >

- ▶ 추진배경 : 다원화된 수사정보망 확보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식별 등 부정·불량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원의 전문 능력 활용하여 전문적인 수사 추진
- ▶ 주요내용
  - 지 명
    - 민생 6대 분야(식품위생, 환경, 축산물,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감시원 경험이 있는 자 중
    - 각 시·군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2~4명씩 총 30명가량 지명 운영
  - 역 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추진을 위한 다원화된 수사정보망 확보를 위해 도민 생활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제보활동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식별 등 부정·불량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원의 전문 능력을 활용하여 단속 및 수사업무 지원
- ▶ 활동시기 : 2015년 1월 이후 활동 개시

##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체험장 운영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80-5661)

▣ 전국 최초로 물놀이 안전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워터파크형 물놀이 안전체험을 전북119안전체험관(임실 소재)에서 운영합니다.

-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15년 여름 개장을 목표 전북119안전체험관 내 10,000m<sup>2</sup>의 부지에 급류·물웅덩이·선박침몰·익수체험 등 안전체험 시설과 종합물놀이 체험장, 키즈풀 등 물놀이 시설이 결합된 안전 테마파크입니다.
-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처능력을 유아에서 성인까지 연령대에 맞게 체험할 수 있으며, 개인·가족 체험객 및 가족, 학교 등 단체 체험객 모두 인터넷 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safe119.sobang.kr>)에서 예약·접수  
운영기간 : 매년 여름철

[ 전북119안전체험관 내 물놀이안전체험장 조감도 ]



■ 전북119안전체험관은 2013년 3월 개관 이래 연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국 최고의 안전교육 명소입니다.

- 위치는 임실공설운동장 옆(임실군 호국로 1630)이며,
- 국내 최대 규모인 100,154m<sup>2</sup> 넓은 부지에 위기탈출체험동, 재난종합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등 3개관에서,
- 유아에서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춘 '놀이·교육·체험'을 결합한 40가지의 종합 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afe119.sobang.kr>)를 방문하시면, 체험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북 119안전체험관 전경 >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소화기체험	지진체험	교통체험	소방자 화재진압	고공횡단	뿔기인명구조	꼬꼬마119	윙윙쌍둥(태종)	대릉대릉(산악)
생활안전체험	심폐소생술체험	화재대피체험	구조대탈출	원강기탈출	외줄도하	더듬더듬(화재대피)	똥덩똥덩(물놀이)	흔들흔들(지진)

#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 시행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905)

■ 의사소통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기를 보급합니다.

- 간편신고 전화기 보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위급상황 시 유형별 (화재, 구급, 도움) 신고음성이 녹음된 단축버튼 누르면 의사소통 없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119간편신고서비스 개념도 ]



##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

- ▶ 추진배경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119신고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안전 확보
- ▶ 주요내용
  - 도내 재난취약계층에게 간편신고 전화기 보급(600대)
  - 기 구축된 119시스템에 수혜자 DB를 등록하여 신고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수혜대상 : 장애인(청각, 뇌병변), 독거노인, 이주여성, 소년소녀가장 등

## 소방서 방문없는 소방민원 처리 (e-소방민원 처리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 063-280-3807)

■ 소방서 방문 없이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민원을 접수·처리 및 교부 합니다.

-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소방민원처리 및 문자 메시지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방시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화재증명, 구조구급 증명 등 소방민원 52종을 소방서 방문 없이 접수·교부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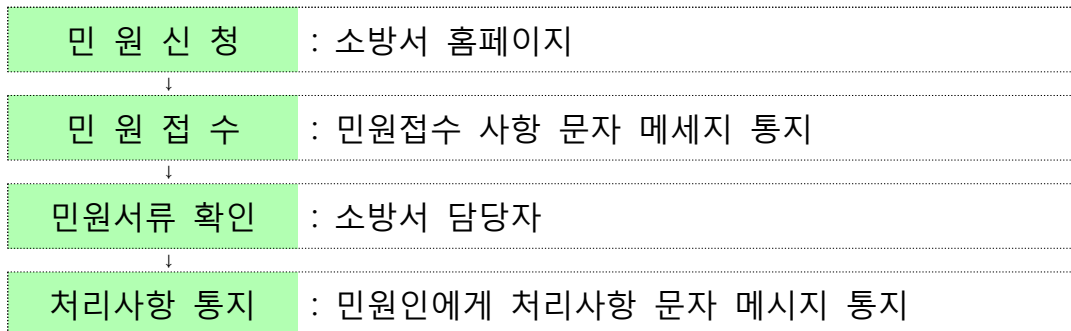
### <e-소방민원 처리제 운영>

▶ 추진배경

- 민원인의 소방민원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 및 신속한 처리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 화재증명, 구조구급 증명 등 소방민원 52종 인터넷 민원접수
- 운영방법



- ▶ 적용시기 : 2015년 하반기

# 정읍소방서 신축 · 이전으로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80-3805)

▣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인 정읍소방서 노후청사의 신축 이전 ·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2월(예정) 하북동에 위치한 새로운 청사에서 더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읍소방서 신청사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3 (하북동)
- 규 모 : 대지 6,780㎡, 건물 연면적 2,896㎡
- 사업비 : 7,660백만원

[ 정읍소방서 위치, 조감도 ]

정읍소방서  
신청사 119



# 언제나 찾아오고 어디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 063-280-3809)

▣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험하면서 안전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전 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고품질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소방서에는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여 도민이 언제나 가까이에서 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직장, 학교 등 원하는 곳은 어디나 교육 전문교관이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 또한, 축제·행사장에도 안전체험코너를 운영합니다.



## 8. 교육·문화

### 문화·예술인패스 시범 시행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063-280-3312)

#### □ 추진 배경

- (문화패스) 전시, 공연 분야에서 대학생·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술인패스) 순수 예술인의 활동분야에서 최소한의 예술인 예우제도 도입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

(문화 패스) 대학생·청소년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관람료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받는 패스 도입('14~) 등 예술 향유 여건 개선  
(예술인패스) 예술인들이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 추진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인패스 총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인패스 발급 및 문화·예술인패스 홍보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예술인패스 (시범) 시행

#### □ 문화·예술인패스 시범 시행

- (문화패스) 전시·공연장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현 행	시 행
청소년(13~18세) / 중·고생 / 중·고·대학생 / 24세 이하인 자 등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에 대한 할인제도는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 별도 패스 발급하지 않음(학생증,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연령이 확인 가능)

-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 예술인에게 발급) 소지자에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 예술인패스 발급 : 현재 8,913명(10월 1일부터 활용 가능) >**

- (개인)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 박물관·미술관장(설립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법인) 문학·시각예술·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패스 심의위원회)에서 법인에 대해 적합, 부적합 심사
- ※ 해외사례 : 프랑스, 러시아의 경우 예술가·미대생 등에게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할인(무료) 혜택 부여(특별전 제외)

**<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예술위 내부규정) >**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소속 회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문학, 시각예술, 공연)에 준하는 예술활동이 있는 자
- 예술인패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심사 제외 대상 : ①사단법인이 아닌 경우(재단법인, 임의단체, 비영리단체, 예술단 등) ②협회의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구성원이 청소년, 생활예술인인 경우
- ※ 심사를 통과한 법인의 정회원은 예술인패스 신청이 가능함.

○ (시행기관) 모든 국립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참여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

※ 기 대관된 전시·공연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향후에는 대관되는 전시·공연프로그램에도 시행 유도

○ (시범시행) 2014년 10월 1일~

※ 10월 1일부터 예술위([www.arko.or.kr](http://www.arko.or.kr))의 웹페이지([artpass.arko.or.kr](http://artpass.arko.or.kr))를 통해 예술인패스 제도 및 문화·예술인패스가 적용되는 시·도별 전시, 공연프로그램 안내

## □ 향후 추진계획

○ 10월 1일부터 매월단위로 예술인패스 신청접수 및 발급

▶ 예술인패스 발급대상자가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http://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말일까지 발급(우편 발송)

※ 전문예술인 법인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패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소속 정회원들이 예술인패스 신청 가능함.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참여 확대 추진(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전시·공연장 대관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협조

▶ 관람료가 조례(규정)에 명시된 경우 2014년 말까지 개정 유도

※ 2014년 12월말 예술인, 참여기관 등 간담회 개최, 예술인패스 제도 평가 실시

##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063-280-4336)

■ 안전하고 위생적인 야영장 이용을 위해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등록·관리됩니다.

- 2015년 1월 29일부터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됨에 따라,
  - 관련 사업자는 입지, 규모, 시설 및 안전 기준 등을 갖추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일반 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

- ▶ 추진배경 : 가족 단위 야영인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 관리 필요성 대두
-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 주요내용
  - '자동차야영장업' 외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하여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안전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제시
    - 등록·관리기관 : 해당 시·군 관광부서
- ▶ 적용시기 : 2015. 1. 29.시행, 2015. 5.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춰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
  - 2015년 상반기,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규정 근거 마련 예정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063-280-3312)

■ 2015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사업유형이 간소화됩니다. 또한 지원금 하한선이 1,5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조정되며, OCR카드 채점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 지원신청 자격 완화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가

<2014년 지원신청 자격>

최근 1년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

- 사업유형 간소화 : 4개 유형(문화예술창작, 신진예술가, 문화예술기반구축, 문화예술교류활동)

<2014년 사업유형>

①문화예술창조역량강화 ②문화예술매개활동활성화 ③문화예술교류활동지원사업  
④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사업 ⑤장애인·소수자 문화활동지원사업 ⑥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 순수예술 및 전업예술가 지원 강화
  - 문화예술교육체험지원사업을 폐지하되,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화
- 지원금 하한선을 2,000천원으로 조정(1,500천원 ⇨ 2,000천원)
- 신진예술가 지원확대 : 연령 제한을 만 40세이하 예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만 35세이하 ⇨ 만40세이하 예술인)
- OCR카드 채점 심사제 도입 : OCR 카드 채점 심사제를 통한 개별심사제 확립으로 심사위원간 담합 방지
- 심의 기피제 강화 : 각종 예술단체의 현직 회장단(회장,부회장)인 경우, 해당 소속단체 회원의 작품을 심사할 수 없음.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인터뷰 심사 도입 : 심층면접 인터뷰 심사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전년도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시 반영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지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063-280-3308)

-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고 전승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지원되어 오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지원

### ▶ 2015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인상

(단위:천원)

구 분	전수활동비(월)		전수장학금 (월)	공개행사비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 준	700	500	100	1,500	2,400
인상분	800	600	200	2,500	3,400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를 신규 발굴·지정하여 예향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가치 회복
- 지원대상 : 보유자(42종 67명), 명예보유자(6종 8명), 12단체
- 사업비 : 1,170백만원 (도비 468, 시군비 702)
- 지원내역
  - 전수활동비 (매월) : (명예)보유자 800천원, 보유단체 600천원
  - 전수장학금(매월) : 전수장학생 200천원
  - 공개행사비 (년1회) : 보유자 2,500천원, 보유단체 3,400천원
- 사업내용 : (명예)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9. 농식품·산림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063-280-4159)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농촌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제출하면 검토후 인증서 발급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정보 제공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보육, 경영, 컨설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판매, 유통 및 홍보지원 등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전문가 의견수렴후 지구 지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매년 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제 시행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판로지원 등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전문가 의견수렴후 지구지정
- ▶ 적용구분 :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완화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063-280-4194)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2015년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부터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이 완화됩니다.

- 부지구입 비율을 「시설물별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총사업비의 25~35% 이내」로 완화하여 시설의 입지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던 과정을 5억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에 한하여 통합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사업규모별로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의 「권역종합개발사업」만 지원하던 사무장 인건비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까지 확대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됩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완화>

- ▶ 추진배경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 도모
- ▶ 주요내용
  - 부지구입 예산 비율 제한 완화 : 총사업비의 25~35% 이내
    - 농촌중심지 활성화 : 35%이내
    -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권역종합) : 30%이내
    - 기타사업 : 25%이내(신규마을은 지원불가)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 마을단위사업 및 5억원 이하 시군 창의 사업
  - 사무장 인건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
    - 창조적 마을만들기(권역종합), 농촌중심지활성화
- ▶ 적용구분 : 2015년 착수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7)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 및 수질관리 기준을 통합적으로 규정
  - 점검대상 시설 : 백사장, 환경·행정·체육·편의·판매·대여시설
- 해수욕장시설을 주기적 점검과 이용자의 안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과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
  - 과태료 대상 : 지정된 장소외 취사 또는 야영, 불법 시설물,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 물놀이구역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이용 행위 등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수욕장의 이용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
- ▶ 관련근거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주요과태료 대상
  -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3~5만원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경우 5~10만원
  - 지정된 시간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5~10만원
  -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한 경우 3~5만원
  -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한 경우 3~5만원
  - 허가 없이 토석, 자갈, 몽돌, 모래를 채취할 경우 3~5만원
- ▶ 적용시기 :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

#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전라북도 해양수산물(☎ 063-280-4654)

■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 관련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 표시대상 : 염장수산물,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은 제외)
  - 표시품목 : 식염(천일염, 정제소금)
  - 표시요령 : 국산, 수입산
  - 시료검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 추진배경 : 식염의 원산지 정보 표시를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 주요내용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 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로 정함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라북도 해양수산물(☎ 063-280-4657)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2015년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뱀장어와 김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뱀장어는 고창, 김은 군산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은 순 보험료의 50%는 국가 지원이며, 자부담 50% 중 27%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실제 양식어가는 보험료의 23%를 납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안내>

#### ▶ 주요내용

- 대상품목 : 뱀장어(고창), 김(군산)
- 보험범위 : 양식수산물(뱀장어·김), 양식시설물
- 가입처
  -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지부(군산), 군산시수협, 고창군수협
- 보험가입기간
  - 뱀장어(고창) : 2015. 1. 1~6. 30 / 10. 1~12. 31
  - 김(군산) : 2015. 9. 1~12. 31

※ 보험료 : 뱀장어 140,000천원(지원액 3,780천원), 김 9,000천원(지원액 2,430천원)

▶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063-280-3263)

-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 중 상품화 시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판매 마케팅, 제품 패키징·디자인, 유통망 확보, 제품홍보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 '15년 신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 중 평가를 통한 선별
  - 개발 상품 중 상품화시 매출효과와 시장성이 뛰어난 상품에 대한 디자인·패키지 및 유통망 등 지원으로 실질적 사업효과 극대화

###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

- ▶ 추진배경 :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유통망확보 및 상품화 지원
- ▶ 주요내용
  - 판매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유통망 지원
  - 제품 패키징·디자인
    - 개발상품의 패키지 디자인 지원
  - 제품홍보
    - 발효식품엑스포, 전시회 등을 통한 개발상품 홍보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

# 밭농업 직불금 전품목 확대 지급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2643)

## ■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금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 밭직불금은 '12년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14년과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지급

### < 밭농업직불금 모든 품목으로 확대 지급 >

- ▶ 추진배경 : 밭작물 자급능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 주요 변경내용
  - 대상농지
    - 기존 : 공부(公簿)상 밭(田), 논 이모작 (맥류·사료작물)
    - 변경 :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품목
    - 기존 : 26품목, 논 이모작(동계작물)
    - 변경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
  - 지원단가
    - 기존 : 40만원/ha
    - 변경 : 일반품목 25만원/ha,  
기존 26개품목 40만원/ha(15만원+25만원)  
논 동계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2645)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2015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14) 43개 품목 → ’15) 46개 품목 확대지원 (3개 추간 :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 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벼·벼싹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 사과·배·단감·감·곶감·곶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꽃고추·호박·국화·장미)(26개 품목)
    -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15년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복분자	인삼·오디·차· 시설과프리카 ·시설멜론	배(전국 판매)·넝파리버섯· 포고버섯·시설상추·시설부 추·시설시금치·배(적과전종 합위험)	시설가지·시설 배추·시설과 ·단감(적과전종 합위험)
작물수	2	1	5	7	4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변경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4632)

## ■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을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적용 등 합리적인 배정 기준마련 시행

- 2015년 7월 1일부터는 경종용 농기계는 농지규모별 지원으로 바뀌고, 난방용 농기계(온풍기 등)는 유종을 경유·등유·중유에서 등유·중유로 변경
  - (경종용 농기계) 논·밭 등에 사용하는 트랙터·콤바인·경운기·곡물건조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면세유는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하여 실 사용량을 산출하여 공급됩니다.
    - \* 당초 : 농기계 기종별 마력수(조건표)에 의해 지급(추가 배정시 농협에 별도 증빙)
    - \* 변경 : 농기계 기종별 마력수(조건표) + 영농규모별(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활용)
  - (난방용) 온풍기 등 시설에 사용되는 난방용 면세유는 공급유종 단일화 '15.7.1부터 경유가 제외되고 등유·중유로 전환 공급됩니다.
    - \* 당초 : 경유, 등유, 중유, ⇒ 변경 등유, 중유('15. 7. 1 시행)

### <농업용 면세유 실제 사용량공급 및 난방용 경유지원 제외>

- ▶ 추진배경 : 농업용 면세유를 농지규모(자경·임차)에 따른 실제 사용량을 배정하여 동일 농지·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와 난방유 유종 단일화
- ▶ 주요내용
  - 배정기준
    - (경종용)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경유제외)
      -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농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 ▶ 적용시기 : 2015년 7월 1일 시행 예정('15년 상반기 홍보 및 제도 보완 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조정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3285)

- 영연방 FTA대책 여야정 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보조+융자 사업의 융자 이자율 1% 인하됩니다.(당초 3% → 변경 2%)
  - 지원조건
    - 기존 보조 지원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변경(준전업농~전업농) :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기업농과 준전업·전업농 분류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14.12.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을 기준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당초 '11.12.31일 이전 → 변경 '14.12.31일 이전)
  - 지원형태
    - 사육규모(면적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 변경 :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조정>

- ▶ 추진배경 : 영연방 FTA 대책 여야정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조정
- ▶ 주요내용
  - 융자 이자율 1% 인하
    - 당초 3%에서 2%로 인하
  -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판단
    - 당초 기준일 '11.12.31일 이전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해당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사업 용자이율 인하

전라북도 축산과 ☎ 063-280-3286

■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사업 용자 이율을 인하

- 지원조건 : 국비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 용자조건  
(당초)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변경)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한도 : 조사료 재배면적 30ha 당 150백만원

###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용자 이율 인하 >

- ▶ 추진배경 :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
- ▶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등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표고자목 구입비용 국비지원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063-280-2683)

### ■ 표고자목 구입비용도 국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 m<sup>2</sup>(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동일 면적의 노지원목 표고재배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지원 기준
  - 분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분수 : 1,000본/330m<sup>2</sup>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지원 비율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표고자목 구입 비용 국비지원>

- ▶ 추진배경 : 표고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유도
- ▶ 주요내용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20%
  - 지원기준
    - 분당 금액 : 3,760원
    - 면적당 분수 : 1,000본/330m<sup>2</sup>
    - 지원한도 : 임업인 3천본, 단체 8천본 이내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및 의무사항 폐지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063-280-2683)

■ 2015년 부터는 수액채취 허가 조건이 간소화되고 수액채취자의 의무 사항도 폐지됩니다.

-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 15년부터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수액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취허가 기간 3년 이내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허가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액채취자의 산불, 산림보호, 야생동물 보호관련 의무 사항과, 수액채취자의 복장 착용 및 채취원증 패용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 수액 판매자는 채취일과 제조일 ·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수액 판매자로 하여금 수액 유통관리에 대하여 채취일과 제조일 · 유통기한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및 수액채취자의 의무사항 폐지>

- ▶ 추진배경 : 허가 조건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와 산촌주민 소득 증대
- ▶ 주요내용
  - 수액 채취자의 의무사항 폐지
    - 매년 교육이수 의무
    - 산불, 산림 · 야생동물 보호관련 의무
    - 복장 착용 및 채취원증 패용 의무
  - 수액 채취자의 허가절차 간소화 : 채취 허가기간 3년 이내 제한 폐지
  - 수액의 유통관리 강화 : 수액의 채취일자와 제조일 · 유통기한을 용기에 표기
- ▶ 적용시기 :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

##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2686)

- 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사육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판매단계로 나누어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pig.mtrace.go.kr>)와 스마트폰(돼지고기 이력정보)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와 수입돼지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고 질병발생 및 식중독 등 위해요소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

- ▶ 추진배경 :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돈산업 발전 도모
- ▶ 주요내용
  -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부여(6자리), 신규농장 및 미신고 농가는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청
  - 도축단계 : 농가별 농장식별번호 표시확인 및 이력번호발급신청  
이력시스템에서 이력번호(12자리)확인 및 도체 표시(라벨,표시기)
  - 가공단계 : 포장육에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및 전산 신고
  - 판매단계 : 돼지고기 진열 및 판매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력번호 표시
  - 소비단계 :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돼지고기 이력번호 조회 가능
- ▶ 적용시기 : 2014년 12월 28일부터 모든 단계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063-280-2649)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상향 지원합니다.

- (종전) 정부 고시 표준수출물류비의 22%
- (변경) 정부 고시 표준수출물류비의 **25%**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지자체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간 과당지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원 한도를 표준수출물류비의 25%로 정하였으나, 그간 22%였던 우리 도 지원 비율을 최대한도인 25%로 상향 지원합니다.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 ▶ 추진배경 : FTA에 대응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 주요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 표준수출물류비의 22% → **25%**
    - 신선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일본 엔화약세에 대응, 수출 농가의 일부 소득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유지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출분 부터 적용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지원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0)

■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펠러에 그물이나 로프를 절단하는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5톤이상 등록 어선
- 사업절차 : 희망어업인 → 사업신청(시군) → 대상자선정(시군) → 사업추진
- 지원내용 : 자동절단기 구입 지원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 ▶ 추진배경 : 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영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톤 이상 등록어선
  - 사업량 : 30대(군산시 16, 고창군 3, 부안군 11대)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지원단가 : 대당 3백만원
  - 제외대상 : 방치폐선 및 감척대상 어선
- ▶ 지원시기 : 2015년 신규사업

## 어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0)

■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 안전사고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시군에 등록된 어선(영세어업인 우선 지원)
- 사업절차 : 희망어업인 → 사업신청(시군) → 대상자선정(시군) → 사업추진
- 지원내용 : 구명조끼 구입 지원

### <어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 ▶ 추진배경 : 어선의 안전사고 발생시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여건 정착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군에 등록된 어선(영세어업인 우선 지원)
  - 사업량 : 1,200개(군산시 648, 고창군 96, 부안군 456)
  - 사업비 : 140백만원(도비 32, 시군비 80, 자담 28)
  - 지원단가 : 개당 117천원
  - 제외대상 : 방치폐선 및 감척대상 어선
- ▶ 지원시기 : 2015년 신규사업

##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4)

■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험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어촌체험마을
- 사업절차 : 희망어업인 → 사업신청(시군) → 대상자선정(시군) → 사업추진
- 지원내용 : 안전장비(심장 제세동기, 산소호흡기, 구명동의), 체험시설 개·보수

###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 ▶ 추진배경 : 어촌 체험객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시설 확충으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촌체험마을
  - 사업량 : 5개소(군산시 1, 고창군 3, 부안군 1)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36, 시군비 84, 자담 80)
- ▶ 지원시기 : 2015년 신규사업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

전라북도 해양수산물(☎ 063-280-4645)

■ 수산물의 특징인 부패를 예방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합니다.

- 지원대상 : 어촌계, 어업인
- 사업절차 : 희망어업인 → 사업신청(시군) → 대상자선정(시군) → 사업추진
- 지원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 ▶ 추진배경 :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 조절로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촌계, 어업인
  - 사업량 : 5개소(군산시 2, 고창군 1, 부안군 2)
  - 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25, 시군비 50, 자담 75)
  -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
- ▶ 지원시기 : 2015년 신규사업

## 데미샘 자연휴양림 예약기간 및 결제방법 확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6992)

■ 데미샘 자연휴양림 예약기간 및 사용료 결제방법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대

- 2012년 9월 21일 개장이후 1박2일만 예약가능하던 것을 2015년 1월 1일부터 2박3일까지 예약기간 확대 및 예약방법을 매월 1일 오전 9시로 월단위로 예약
-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시설사용료 결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가상계좌 결제방식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불편해결

### < 데미샘자연휴양림 예약기간 및 결제방법 확대 >

- ▶ 추진배경 : 개장이후 시설 이용가능기간, 시설사용료 결제방법의 이용자 불편 해소 필요성 대두
- ▶ 주요내용
  - 이용 가능기간 확대
    - 시설 예약시 1회 1박2일만 가능하던 것을 2박3일로 확대
  - 시설사용료 결제방법 확대
    - 시설사용료 결제방법을 인터넷활용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3가지 방법으로 확대 이용자 편의 증대
  - 이용가능기간 확대에 따른 시설 예약방법 변경
    - 숙박일 1개월전 오전 9시 일단위 예약에서 매월 1일 오전 9시 1개월 범위 예약으로 변경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063-290-6191)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시험·분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 하였습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납부 규정이 폐지되어 별도로 수입증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으로 개선 하였기에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결제 가 가능 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험·분석 의뢰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별도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 ▶ 주요내용
  -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의 납부방법 완화
    - 수입증지납부 → 수수료 납부
  - 수수료의 납부방법 완화 및 납부방법 일부 삽입
    - 현금납부 →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시험·분석 의뢰인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두어 개인정보 과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자 전화번호)
-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5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1. 세제 · 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	□ 20개비 1갑당 641원	□ 20개비 1갑당 1,007원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7)
2.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신 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특별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 ○ 2015.1월부터 시행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749)
3.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자격 ○ 순위제도 변경 - 1순위 : 6개월이상 가입자 - 2순위 : 6개월이상 가입자 - 3순위 :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후 2년후 변경가능,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변경시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허용 ○ 유주택자 감점 부여 ○ 60㎡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천만원이하 주택	□ 청약제도 ○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자격 - 청약자격을 세대원까지 완화 ○ 순위제도 변경 - 1순위 : 6개월이상 가입자 - 2순위 :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기간 폐지 -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 유주택자 감점 폐지 ○ 60㎡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8천만원이하 주택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063-280-3462)
4.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 공공건설임대 : 개발공사, LH 등 5,500호 ○ 매입·전세임대 : LH 4,500호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063-280-2368)
5.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학력제한 철폐	<신 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 7년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자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어도 전문인력 인정 ○ 시행일 : 2014. 12. 11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063-280-2318)
6. 새만금사업지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관광단지)만 적용	□ 새만금사업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 시행 : 2015.1.1.일부터 ○ 대상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감면 : 취득세·재산세 3년간(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시 5년간) 100%, 2년 50%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063-280-2083)
7. 지방세 관련 중소기업 멘토링제 운영	<신 설>	□ 도내 지방세 10년이상 경력직 공무원으로 100개 중소기업 지방세전담 상담사 운영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1)

## 2. 공정거래 · 금융 · 조달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금지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법령에 근거가 없이 지출 금지	전라북도 예산과 (063-280-4147)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15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요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 3년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전라북도 예산과 (063-280-4147)
2.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출납폐쇄 기한 및 결산 제도 등 변경	<input type="checkbox"/> 출납폐쇄기한 변경	<input type="checkbox"/> 회계연도 끝난후 2월말	<input type="checkbox"/> 회계연도 끝나는 날(1231)까지 출납을 마쳐야 한다.(2015회계연도부터 적용)	전라북도 회계과 (063-280-2468)
	<input type="checkbox"/> 출납사무 완결기한	<input type="checkbox"/> 다음연도 3월말	<input type="checkbox"/> 다음연도 2월 10일	“
	<input type="checkbox"/> 결산안 작성 및 결산 검사 완료	<input type="checkbox"/> 결산안 작성 : 5. 19 <input type="checkbox"/> 결산검사 완료 : 6. 20	<input type="checkbox"/> 결산안 작성 : 출납폐쇄후 80일(3. 20) <input type="checkbox"/> 결산검사 완료 : 4. 20	“
	<input type="checkbox"/> 결산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결산서류 7종(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채권현재액·채무현재액·공유재산현재액·물품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결산서류 3종(1.결산개요, 2.세입세출결산서(기존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보고서), 3.재무제표(기존 재무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결산서에 계속비·예비비·이월비 명세서, 보조금 반납액 등 첨부	“
	<input type="checkbox"/> 도급경비제도 삭제	<input type="checkbox"/> 도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도급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 3. 산업(중소기업 · 특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원규모 : 80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지원규모 : 100개 업체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4726)
2. Pre-World Class 유망기업 육성	<신 설>	<input type="checkbox"/> 도내 유망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에 선정되도록 집중적으로 육성 ○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규모 : 5개 기업(Pre-WC 선정 기업) ○ 내용 : 해외진출, 기술개발, 인력, 금융, 경영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32)
3.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퇴직후 창업을 희망하는 4050세대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론 및 경영교육, 컨설팅지원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2871)
4. 창업 꿈나무 사업화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 ○ 지원대상 :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 ○ 지원내용 : 오디션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비 지원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2871)

5.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보조금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시설, 장비구축,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기간 : 2015년 1월 ~ 12월 ○ 대상 : 연매출액 3천~3억인 마을기업	
6. 전복상품 온-오프라인 토탈 마케팅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소비자의 needs 충족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온라인 프로모션, 모바일 쇼핑몰 입점 지원 -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직거래장터 지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6)
7.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과 중견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규모 : 도내 창업기업 및 중견기업 65여개 ○ 사업내용 : 맞춤형 1:1 경영 멘토링 시스템 운영, 동반 성장 R&BD 구축·운영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8.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규모 : 30여명 ○ 사업내용 : SW-IT 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9.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재직자들 실무능력 배양 및 이직 방지 지원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규모 : 90여명 ○ 사업내용 : SW-IT 융합 분야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10. 전복시제품 제작소 거점 구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업과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 실현 및 3D프린터 활용의 저변확대 지원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규모 : 전복시제품제작소 1개소,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1개소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4732)
11.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 사업화를 지원 ○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 시행주체 : 전북대TIC ○ 지원규모 : 8개과제(16개사)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4726)
12.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품질혁신기법(TRIZ)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 5개사/1년 ○ 내 용 : TRIZ기법 현장지도, 현장공정개선 지원 및 현장전문가 양성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4)
13. 「전북 R&D사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역 내 R&D종합정보 제공 ○ 대 상 : 누구나 이용 가능 ○ 내 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R&D 종합정보(특허, 인력, 장비 등) 제공 ○ 홈페이지 : <a href="http://md.jbtp.or.kr">http://md.jbtp.or.kr</a>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4)

14.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 기업 육성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탄소소재 벤처창업기업 육성 ○ 대 상 :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 내 용 : 탄소관련 벤처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평가 분석지원, 설계 및 역설계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063-280-2165)
15. 뿌리기술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 도의 뿌리기술 전문가의 도내 기업 채용을 지원	전라북도 산업진흥과 (063-280-2267)

#### 4. 환경 · 국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폐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가 160㎡(약48평) 이상 시설물 부과	<input type="checkbox"/> 건물에 부과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하반기분부터, '15.7.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 (변경) 시설물 부과 폐지 (모든 면적)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22)
2. 유해화학물질관리업무미관	<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유독물 영업의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지방환 경청장) 에게 유독물 영업 허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280-3525)
3. 가스 경질유 사용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적용확대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가스, 경질유 사용 보일러, 숯가마·찜질방, 숯가마제조시설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280-3525)
4. 어린이용품 위해성 초과시 사용제한 금지가능	<input type="checkbox"/>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금지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도 환경보건법 적용 ○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금지 가능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52)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20년까지 온실가스 30%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상 사업장 - 연간 125천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 또는 연간 25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1)
6.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사후관리 강화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14.7.17 개정공포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 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어 등록 의무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1)
7. 환경정책자금 지원확대		<input type="checkbox"/> '14년도 1,825억 대비 22% 증가,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대 <input type="checkbox"/>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과 지방 상수도 개발자금, 환경분야 정책자금사업 일원화로 2015년부터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52)
8.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 개선	<input type="checkbox"/>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설립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존 취수시설로부터 7km 초과하는 지역외에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의 지역에도 공장설립 가능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2878)

9.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토양환경센터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토양오염 원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문 가능 <input type="checkbox"/>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토양보전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토양환경센터 설치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3557)
10.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부담완화	<input type="checkbox"/>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	<input type="checkbox"/>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착수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100분의 25 이상으로 변경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4451)
11. 도시공원 내 음식점매자동차(푸드트럭) 식품판매 허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도시공원 내 금지되어 왔던 음식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한 식품판매 행위 허용 <input type="checkbox"/> 대상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제외) <input type="checkbox"/> 허용차량 : 이동용 음식점매용도 차량 <input type="checkbox"/>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행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4498)
12.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 및 의뢰개선	<input type="checkbox"/> 상위법 제명 변경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관리법」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용 징수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로 징수한다. <input type="checkbox"/> 품질검사의뢰서 확인서폐지 <input type="checkbox"/>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 진흥법」 <input type="checkbox"/>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의뢰서만 제출로 변경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063-290-6715)
13.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 <input type="checkbox"/> 주거밀집지역 <input type="checkbox"/> 상수원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특별대책지역	<input type="checkbox"/> 4대강 수변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14.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	<input type="checkbox"/> 재활용시설은 신고대상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퇴·액비시설은 신고대상, 퇴·액비시설을 제외한 자원화시설 및 정화시설은 허가대상 <input type="checkbox"/>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행정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063-280-3569)

15.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유입 시키지 아니하여야함 <input type="checkbox"/>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자는 시설설치 또는 변경 완료시 준공검사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퇴비·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input type="checkbox"/>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자 이외에 가축분뇨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 준공검사 받아야함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포 (063-280-3569)
16. 가축분뇨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화	<input type="checkbox"/>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설치허가 취소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위반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사용중지(사용 중지에도 같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폐쇄명령 <input type="checkbox"/> 행정명령 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포 (063-280-3569)
17.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신설>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 적법하게 허가 받거나 신고 할 수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배출시설로 인정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포 (063-280-3569)
18.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신 설>	<input type="checkbox"/> 2015년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 적용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과태료) - 1차 승차거부 시 : 20만원 - 2차 승차거부 시 :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 3차 승차거부 시 : 60만원과 운전 자격취소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1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60일 사업 일부정지, 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 2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 감차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 3차 승차거부 시 : 일반택시·개인택시 면허취소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7)
19.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급 ○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15년부터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민자치센터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4702)
20.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 물질 저감시설 설치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연방사성물질(라돈) 저감시설 설치 ○ 소규모수도시설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저감시설 설치 보급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4702)
21.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설치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 설치 ○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성화장실을 남성의 2배 설치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280-3454)
22.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 부하량 조사	<input type="checkbox"/> 수질측정망 운영 ○ 새만금지방환경청 9지점, 전라북도 13지점 등 26지점 월1회 조사	<input type="checkbox"/> 새만금 상류 오염부하량조사 시행 ○ 조사항목 유량추가, 전라북도 20지점 확대로 맞춤형 수질측정망 46지점 (매일 3지점 조사)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 (063-290-5245)
23.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예보권역 6개 권역,예보횟수 2회, 예보등급 5개 등급으로 예보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 예·경보제 확대 시행 ○ 예보항목 초미세먼지, 오존 추가, 예보 권역 10개 권역 세분화, 예보횟수 4회로 확대, 예보등급 4개 등급으로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063-290-5254)

24. 전라북도 악취배출시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input type="checkbox"/>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input type="checkbox"/>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343)
25.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input type="checkbox"/> 점검대상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input type="checkbox"/> 실내공기질 관리법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344)
26.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여 학생 통학편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지역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1,000명 정도 - 재정부담 : 도, 시군, 교육청 및 이용자 공동 부담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7)
27.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 수립	<신 설>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분석, 저감대책,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역단위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재해대책법 제16조 제2항 규정 범적사항 <input type="checkbox"/>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절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서(안)을 작성(시.군)→ 의견수렴(관계기관, 주민, 의회 등)→ 도 협의 보완 → 검토,승인(국민안전처) → 주민공람 - 14개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전라북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15년~'16년)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063-280-4380)

## 5. 보건복지 · 여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호국보훈수당 도입	<input type="checkbox"/> 통합급여 실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등)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경우 선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선정기준 다층화 : 맞춤형 보호 확대 <input type="checkbox"/>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로 지원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 1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4인가구 : 290만원 → 470만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8)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input type="checkbox"/> 통합급여 실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등)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경우 선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선정기준 다층화 : 맞춤형 보호 확대 <input type="checkbox"/>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로 지원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 1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4인가구 : 290만원 → 470만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대폭 완화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은 120%) <input type="checkbox"/>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위기사유 : 6가지 사유 규정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이하 <input type="checkbox"/>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위기사유 : 6가지 규정 외 인정요건 완화 (지자체장 판단 재량 확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767)
4.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추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20만원 지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25만원 지원 (도 5만원 + 교육청 20만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767)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및 방법 마련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 단선·단수·건보료 체납 등 정보 공유, 민관협력, 확인조사 <input type="checkbox"/> 관련 종사자 신고의무, 개인정보 보호강화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4)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33)
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1인당 7만원/월	<input type="checkbox"/> 1인당 10만원/월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077)
8.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input type="checkbox"/>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input type="checkbox"/> 1식 3,000원	<input type="checkbox"/> 급식지원 단가 인상 <input type="checkbox"/> 연중 급식, 방학중 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단가 인상 <input type="checkbox"/> - 1식 '14년 3,000원 → '15년 3,500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768)
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지원 서비스 비용 20만원 지급 <input type="checkbox"/>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 가족 <input type="checkbox"/> 내용 :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10.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설(전주시 1개소) <input type="checkbox"/> 내용 : 장애인에게 맞춤형 인문학, 교양, 인권 교육 등 실시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415)
11. 국가예방접종 1종 확대실시	<input type="checkbox"/> 국가예방접종 13종 30회 무료접종 대상자 무료접종실시	<input type="checkbox"/> 국가예방접종 14종 32회 무료접종 대상자 무료접종실시(소아 A형간염 추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2)
12.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기준 신규도입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영업소에서 의료기기 품질확보 방법과 그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함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3252)
13.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input type="checkbox"/>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	<input type="checkbox"/>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3506)
15.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경로당 500개소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2423)
16.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운영 <input type="checkbox"/> 가족봉사단 운영 <input type="checkbox"/> - 지역 소외계층과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연결 <input type="checkbox"/> -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재롱잔치, 벽화봉사, 문화공연 등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063-280-2241)

17.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 등 지원(1가정당 4,000천원 이내 지원, 125가정) *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추후 시군 사업공고 참조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063-280-2816)
18. 안심 먹거리 운동 추진	<신 설>	<input type="checkbox"/> 안심 먹거리 체험교실, 교육 등 안심 먹거리 운동 전개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 6. 고용노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청년취업지원사업 개선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 대상기업,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신청 방법 ○ 청년취업비용(150만원)중 월 100만원 이상 부담가능 업체 ○ 지원한도 : 80만원(정액) ○ 적격심사 - 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 ○ 기업 모집 - 도 : 사업개시 일괄모집 - 시군 : 수시모집	<input type="checkbox"/> 청년취업비용(160만원) 중 최저 임금이 정하는 임금(월 110만원) 이상 부담가능 업체 ○ 지원한도 : 최대 80만원(차등지원) ○ 적격심사 강화 - 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과 심사기준 검증 실시 ○ 기업 모집 : 시군으로 일원화 - 시군 : 사업개시 일괄 모집 및 수시모집 * 신청기업은 기업소재지 시군 및 전북종합일자리센터웹사이트(www.1577-0365.or.kr/young)에 신청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2826)

## 7. 안전·행정·법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재난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	전라북도 안전총괄과 (280-2992)
2.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유관단체)업무 위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없음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간 (업무관련성 범위)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공직유관단체)업무 대행 추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간 (업무관련성 범위)2급이상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3급이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전라북도 감사관 (063-280-2388)
	(자격증 소지자 취업제한 확대) 국무총리, 장·차관 등	(자격증 소지자 취업제한 확대) 재산공개자	
	(기관업무 취업 제한 확대) 대상 기간 퇴직 전·후 1년	(기관업무 취업 제한 확대) 대상 기간 퇴직 전·후 2년	
	(취업이력공시-2급이상)없음	(취업이력공시-2급이상)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취업심사 결과공개)없음 (취업제한 관련 벌칙규정 강화) 징역1년 ↓, 벌금1천만원 ↓ (기타 제도 보완사항)없음	(취업심사 결과공개)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취업제한 관련 벌칙규정 강화) 징역2년 ↓, 벌금2천만원 ↓ (기타 제도 보완사항)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기획 · 총괄기관의 업무보완	
3.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수신 동의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 동의 미수행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모든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 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 의무화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 시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 <신설> <input type="checkbox"/>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2년마다 확인 <신설>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3035)
4.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관서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부 2년 자체보관	<input type="checkbox"/> 작동기능점검 실시후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807)
5. 영상제작센터 (인터넷방송)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도민 UCC 교육 및 도민 기자-리포터 체험 교육 (분기별)	전라북도 홍보기획과 (063-280-3341)
6.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적용	<input type="checkbox"/> 2013.2.23.부터 일반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input type="checkbox"/>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의 영업주도 2015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게이밍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이밍제공업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836)
7. 선도 정보화마을 선정 확대	<input type="checkbox"/> 매년 2개 마을 선도마을 지정하고, 기 선정된 마을은 제외 ○ 지원액 : 마을당 50백만원 (도25, 시군25)	<input type="checkbox"/> 마을간 선의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보화 마을로 지원 대상 확대 ○ 2개 마을 ⇒ 4개 마을(2개 마을 확대) ○ 마을별 50백만원 전액 보조 ⇒ 30백만원(자부담 5백만원)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597)
8.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도민 알권리 보장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공개 수준이 단순한 통계 제공 수준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제약	<input type="checkbox"/>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자료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시각화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15.1월 이후) ○ 관광숙박업 등록현황등 497개 공공데이터 ○ 문화관광 불거리, 먹거리등 26개 데이터 가공 ○ 전통사찰 현황 등 30개 시각화 자료 구축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386)
9. 문화·관광분야 스마트폰 앱 통합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8개의 앱이 각각 구축되어 개별 서비스가 이루어짐 ○ 전북맛집, 문화행사 모여라, 전북수확여행, 전북이야기, 전북유투어, 전북마실길, 대이수목원, 전북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8개 스마트폰 앱이 '전북여행 휴(休)'라는 앱으로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 ○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앱(App)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다운 설치방법 : 스마트폰 play스토어(앱스토어)에 접속 ⇒ 앱 검색창에서 '전북여행 휴' 검색 및 설치 ⇒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북여행 휴' 클릭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383)

10. 다국어 민원 안내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도민이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민원 안내를 제공받음 <input type="checkbox"/> 민원 구비서류 등의 부족으로 두세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례 많이 발생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언어소통 불편 초래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음성이나 텍스트를 통해 구비서류 등 민원 관련 질의를 하면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구현되는 안내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용대상 : 도민과 다문화가족의 민원목록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 '15. 1. 1일부터 <input type="checkbox"/> 안내건수 : 주민생활, 사회복지 등 101천건 ※ 다운 설치방법은 '전북여행 휴'와 동일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063-280-2162)
11. 도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책자 발간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책자 발간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 미반영, 근거없는 의무부과사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책자로 발간, 도 및 시군에 비치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063-280-2133)
12.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기간 단축	<input type="checkbox"/> 기존 송부기간 30일 소요	<input type="checkbox"/> 재결서 송부기간 개선 20일(단축 10일) <input type="checkbox"/> 도민의 신속한 권익구제 필요성 제기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063-280-2137)
13. 민생6대분야 도민감시원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민생 6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환경, 의약품, 청소년보호) 도민감시원 운영	전라북도 안전총괄과 (280-3601)
14.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 체험장 운영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물놀이 안전체험장 운영 <input type="checkbox"/> 운영시기 : 2015. 여름철 <input type="checkbox"/> 내 용 : 전국 최초 물놀이를 즐기며 안전을 배우는 물놀이 안전체험장 운영 <input type="checkbox"/> 체험시설 : 급류·물웅덩이·계곡·익수·선박침몰 안전체험 등 <input type="checkbox"/> 물놀이 : 종합물놀이체험장, 키즈풀 등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90-5661)
15. 재난취약계층 119 간편신고 서비스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이 어려운 재난취약 계층이 위급 상황 시 간편하게 119신고 <input type="checkbox"/> 위급상황 시 유형별 신고음성이 탑재된 단축 버튼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전화기 보급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905)
16. 소방서 방문없는 소방민원 처리 (e-소방민원 처리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방민원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 및 처리, 교부 가능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807)
17.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으로 소방안전 서비스 강화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지동에 위치한 정읍소방서 청사를 하북동에 신축하여 2015년 2월(예정) 이전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063-280-3805)
18. 언제나 찾아오고, 어디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신 설>	<input type="checkbox"/>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험하면서 안전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전 소방서에서 실시	전라북도 대응구조과 (063-280-3809)

## 8. 교육 · 문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문화·예술인패스 시범시행	<input type="checkbox"/> 문화패스(대학생 청소년 할인) 대상연령 조정 <input type="checkbox"/> 청소년(13~18세) <input type="checkbox"/> 중,고,대학생(24세이하) <input type="checkbox"/> 예술인패스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접수 : 지정기일 <input type="checkbox"/> 시행기관 : 국립기관, 참여기관 <input type="checkbox"/> 할 인 율 : 미정	<input type="checkbox"/> 문화패스(대학생 청소년 할인) <input type="checkbox"/> 청소년(13~24세)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예술인패스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접수 : 매월 신청접수 <input type="checkbox"/> 시행기관 : 국공립기관 및 참여기관 <input type="checkbox"/> 할 인 율 : 청소년 수준(30% 내외)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063-280-48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일반 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일원화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일반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등록·관리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상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input type="checkbox"/> 입지, 규모, 시설, 안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에 등록 <input type="checkbox"/> 시행 : '15. 1. 29, 등록기한 : '15. 5. 31.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063-280-4336)
3.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input type="checkbox"/> 2014년 지원신청 자격 <input type="checkbox"/> 최근 1년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input type="checkbox"/> 2015년 지원신청 자격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063-280-3312)
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증액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역 <input type="checkbox"/> 전수활동비 (매월) : (명예)보유자 700천원, 보유단체 500천원 <input type="checkbox"/> 전수장학금(매월) : 전수장학생 100천원 <input type="checkbox"/> 공개행사비 (년1회) : 보유자 1,500천원, 보유단체 2,400천원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역 <input type="checkbox"/> 전수활동비 (매월) : (100천원 상향) (명예)보유자 800천원, 보유단체 600천원 <input type="checkbox"/> 전수장학금(매월) : (100천원 상향) 전수장학생 200천원 <input type="checkbox"/> 공개행사비 (년1회) : (1,000천원 상향) 보유자 2,500천원, 보유단체 3,400천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063-280-3308)

## 9. 농식품 · 산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6.4)	<신 설>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실시 <input type="checkbox"/>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 계획 제출 <input type="checkbox"/>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토 후 인증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input type="checkbox"/>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 분석과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교육, 경영, 컨설팅 지원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판매, 유통 및 홍보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input type="checkbox"/>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지구 지정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063-280-4159)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한 사항 완화	<input type="checkbox"/>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제한 내용 <input type="checkbox"/> 부지구입 예산 비율 제한 : 시설물별 사업비의 25~35% 이내 <input type="checkbox"/> 신규마을은 지원불가 <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 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사무장 인건비 지원 대상사업 <input type="checkbox"/> 창조정마을만들기(권역종합)	<input type="checkbox"/>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제한 완화 내용 <input type="checkbox"/> 부지구입 예산비율 제한완화 : 총사업비의 25~35% 이내 <input type="checkbox"/> - 농촌중심지 활성화 : 35%이내 <input type="checkbox"/> -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권역종합) : 30%이내 <input type="checkbox"/> - 기타사업 : 25%이내(신규마을은 지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input type="checkbox"/> - 마을단위사업 및 5억원 이하 시군 창의 사업 <input type="checkbox"/> 사무장 인건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 창조적 마을만들기(권역종합), 농촌중심지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 2015년 착수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063-280-4194)

3.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통합적 기준 신설 ○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관리 및 수질관리 - 관리대상 : 백사장, 행정, 체육, 편의시설 등 ○ 안전 저해시설물 및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 지정된 장소의 취사 또는 야영, 불법시설물 설치,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 등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7)
4.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input type="checkbox"/> 식염(천일염, 정제소금)만 원산지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국내산 미역을 수입산 소금으로 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표시예) : 미역(국내산), 천일염(수입산)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4)
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input type="checkbox"/>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국가지원 50%, 자부담 50%	<input type="checkbox"/>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뱀장어, 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일부지원 - 보험료 자부담 50% 중 27% 지원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7)
6. 고부가가치식품 식품화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 중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유통망 확보 및 상품화 지원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063-280-3263)
7. 발농업 직불금 전품목 확대 지급	<input type="checkbox"/> 품목 : 26개+는 동계이모작 ○ 40만원/ha당	<input type="checkbox"/> 품목 : 모든 발작물 ○ 고정직불금 : 25만원/ha당 ○ 26개 품목 : 40만원(15+25만원)/ha당 ○ 논 동계이모작 : 50만원/ha당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2643)
8.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지원	<input type="checkbox"/> 품목 : 43개(농작물) ○ 본사업 26, 시범사업 17	<input type="checkbox"/> 품목 : 46개(3개 추가) ○ 본사업 26, 시범사업 20 *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2645)
9. 농업용 면세유공급 기준 변경	<input type="checkbox"/> 경종용 : 농기계 대수 <input type="checkbox"/> 난방용 : 경유, 등유, 중유	<input type="checkbox"/> 경종용 : 농기계대수 + 경지구모 <input type="checkbox"/> 난방용 : 등유, 중유(경유 제외)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063-280-2645)
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조건 및 지원형태 조정	<input type="checkbox"/> 지원조건 : 보조30%, 융자50%, 자부담 20% → 융자조건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input type="checkbox"/>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 (보조+융자)과 이차 보전방식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융자금 이율 인하 (당초)연리 3% → (변경) 연리 2% * (융자) 이자율 2%, 3년 거치 7년 상환 <input type="checkbox"/> (농가 분류 기준)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3285)
11. 조사료 생산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융자금 이율인하	<input type="checkbox"/> 지원조건 :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 융자조건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input type="checkbox"/> 융자금 이율 인하 (당초)연리 3% → (변경) 연리 2%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3286)
12.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융자20, 자담20% ○ 지원기준 - 분당 금액 : 3,760원 - 면적당 분수 : 1,000본/330m <sup>2</sup> - 지원한도 : 임업인 3천본, 단체 8천본 이내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063-280-2683)

13. 수액채취 허가조건 간소화 의무사항 폐지 등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자는 수액채취를 하기 전에 채취기술 및 사후관리 등 교육을 매년 이수 <input type="checkbox"/> 허가·양여 기간은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자는 산림보호, 산불예방, 야생동물 보호 노력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자는 복장 규격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수액채취원증을 착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 교육이수 의무 폐지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 허가기간 3년 이내 제한폐지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자의 산불, 산림·야생동물 보호 의무 폐지 <input type="checkbox"/> 수액채취자의 복장 착용 및 채취원증 착용 의무 폐지 <input type="checkbox"/>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 ○ 채취일 : 0000년 00월 00일 또는 별도 표기일 등으로 표시 ○ 제조일 유통기한:채취일로부터00일,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시	전라북도 산림복지과 (063-280-2683)
14.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신 설>	<input type="checkbox"/> 쇠고기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로 구분하여 돼지고기 이력을 관리하여 소비자의 국내산 돼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2756)
16.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상향	<input type="checkbox"/> 정부 고시 표준수출물류비 단가의 22%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부 고시 표준수출물류비 단가의 25% 지원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063-280-2649)
17.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어선사고 안정장비 구입 지원 ○ 자동 절단기(카트기) 구입비용 일부지원 - 절단기 비용의 60%를 지원/자부담 40%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0)
18. 어선어업인 구명조끼 구입 지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어선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추진 - 구명조끼 비용의 80%를 지원/자부담 20%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0)
19.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신 설>	<input type="checkbox"/> 어촌체험마을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 어촌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험을 위한 안전장비 및 체험시설 확충 추진 ○ 지원내용(5개소) - 심장 제세동기, 산소호흡기, 구명동의 - 어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4)
20.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조절 지원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보급 - 지원대상(5개소) : 어촌계, 어업인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5)
21. 데미샘자연휴양림 예약기간 및 결제방법 확대	<input type="checkbox"/> 숙박가능기간 : 1박 2일 ○ 사용자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예약방법 : 사용일 1개월전 오전 9시 일단위 예약	<input type="checkbox"/> 숙박가능기간 : 2박3일 까지 확대 ○ 사용자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예약방법 : 매일 1일 오전 9시 1개월 범위 예약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6992)
22.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input type="checkbox"/>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의 납부방법 완화 ○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현금, 수입증지 납부 ○ 시험의뢰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	<input type="checkbox"/>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수입증지 납부방법 폐지 <input type="checkbox"/> 시험의뢰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함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과 (063-290-6191)